

‘생활교육 혁신 연속 토론회’ 네 번째 이야기

학생인권조례 시대, 생활지도 근본 대안 모색

2011. 7. 20



- 주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주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생활교육 혁신 연속 토론회’ 네 번째 이야기

학생인권조례 시대, 생활지도 근본 대안 모색



- 주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주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프로그램

시각	주제	형식	발표자
14:00~14:15	2011 학교가 앓고 있다 - 대안 모색을 위한 현실 응시 -	발표	장경주 (서울학생인권조례 연구용역 교사 연구진)
14:15~14:30	교실에 평화와 인권을 꽂피우기 위한 민주적 생활지도 방안	발제	박종철 (전교조 학생생활국장)
14:30~14:45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생활지도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발제	지윤섭 (영훈고 교사)
14:45~14:55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생활지도	토론	권재호 (선사고, 교사)
14:55~15:05	학생체벌 금지 조치, 악용되고 있다	토론	장추문 (서울아이티고, 교사)
15:05~15:15	학생생활지도 대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책위원장)
15:15~15:30		휴식	
15:30~16:30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차 례

발 표

- I. 2011 학교가 앓고 있다 -대안 모색을 위한 현실 응시-
장경주(서울학생인권조례 연구용역 교사 연구진) 1

발 제

- II. 교실에 평화와 인권을 꽂피우기 위한 민주적 생활지도 방안
박종철(전교조 학생생활국장) 13
- III.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생활지도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지윤섭(영훈고등학교 교사) 35

토 론

- IV.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생활지도
권재호(선사고등학교 교사) 45
- VI. 학생체벌 금지 조치, 악용되고 있다
장추문(서울아이티고등학교 교사) 53
- VII. 학생생활지도 대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59

참 고 자 료

- VIII. 학생생활지도 근본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 65

2011 학교가 앓고 있다

-대안 모색을 위한 현실 응시-

장 경 주

(서울학생인권조례 연구용역 교사 연구진)



I

2011년 학교가 앓고 있다

-대안모색을 위한 현실 응시-

장경주(서울 시흥중 교사)

1. 우린 이미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

사례1

① 1학년 이상훈 군(17)은 "수업시간에 3분의 1 이상이 잠을 잡니다. 또 나머지 절반 이상이 만화책을 보거나 휴대전화로 장난을 쳐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다수의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의해 '범생'으로 놀림 받고, 오히려 바보스럽게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가치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무절제한 동료 학생들의 행태를 꼬집었다¹⁾.

②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아이, 수업시간에 교실을 뛰어다니는 학생들, 교사의 지시와 질책을 우습게 여기는 아이들, 학생지도를 겁내는 교사들… 모두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마저 무너지는 현장.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충격적인 [교실 붕괴]의 현장들이다. 그러나 교실이 무너지는 소리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 일선 교사들은 '교실에서 수업이 불가능한 지 이미 오래'라고 증언하고 있다²⁾.

사례2

몇 달 전부터 수업과 쉬는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화장실과 매점을 들락거리거나 잠자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파마나 염색을 지적하면 "왜 그래요?"라며 대들기도 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했더니 전화기를 내던져버린 사례도 있다.³⁾

위의 사례1과 사례2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사례1이나 사례2는 학교 수업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사례1인 1999년에 한창 '교실붕괴⁴⁾'라는 자극적인 용어와 함께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당시의 사례이고, 사례2는 최근에 지적된 문제 사례의 하나이다.

1) 조선일보,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3)- "교실 바로 세우자" 일선학교에 자정운동 벤진다, 1999.10.27

2) 조선일보,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1)- 수업시간 들락날락…잠자고 …만화보고, 1999.08.24

3) 조선일보, 서울시교육청 전면 체벌금지 50일…현장 교사들 '교실붕괴'토로, 2010.12.20

4)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것, 교사권위의 실추, 공교육 체계의 위기 등을 학교 붕괴의 의미로 규정(윤경철외, 1999)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당시 혼용되어 쓰인 학급붕괴, 교실붕괴, 학교 붕괴를 같은 의미로 보고 교실붕괴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1999년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의 교사 450명과 중·고등학생 7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교사의 78.2%가 '교실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⁵⁾. 윤철경 외(1999)⁶⁾에서 밝히 조사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교사 218명 중 86.7%가 학교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약간 있다 48.6%, 매우 많다 38.1%)고 대답했고 조사대상 학생 2232명 중 70.8%가 학교붕괴 현상이 있다(약간 있다 50.8%, 매우 많다 20.0%)고 대답했다.

당시 교실 붕괴의 원인으로 교사들은 교육제도의 경직성(40.6%), 교육부의 정책실패(31.4%), 학생문화의 급변(20%) 순으로 꼽았다.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40.0%), 교육제도의 경직성(36.5%)을 원인으로 지적했다⁷⁾.

1999년 당시 조선일보는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교실붕괴'의 뒤편에 가족붕괴,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붕괴가 숨겨져 있고, 교실붕괴는 학교 안의 얘기가 아니다⁸⁾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1999년 당시 학교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원인 규명과 대응 방향이 논의 되었다. 2000년에 20명의 교수들에 의해 발간된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⁹⁾』라는 책에서 지적된 당시 교실붕괴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촌지교사고발센터 운영,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과도한 체벌규제 등 교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개혁 과정에서 교사를 소외시키면서 무리하게 진행된 교육 개혁 정책¹⁰⁾
2. 학급당 인원수과다
3. 학생들이 이용하는 생활공간 중에 가장 열악한 학교 교육 환경이 학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문제
4.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방해하는 수업이외에 교사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업무들
5. 행정 중심의 교육풍토
6. 학생들의 흥미에 부흥하지 못하는 교사의 수업방식
7. 삶과 괴리되는 교육내용, 주입식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8. 가족의 교육적 기능 상실
9. 교육을 '전인'교육이 아닌 수요자, 공급자 즉 시장에서의 사적인 이익추구 수단 정도로 보는 관점의 지배
10. 일부 촌지 수수 교사, 폭행교사 들에 의한 교사에 대한 신뢰실추

위 책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학교 위기의 원인을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이에 대한 대안도 단 '하나'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학교위기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뭉뚱그려진 선언적 대안이 아니라 '하나'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 '하나'의 구체적 대안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2000년대 초나 2011년 지금의 학교문제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초 사회적 논란이

5) 전교조(2000),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토론 자료집

6) 윤철경 외(1999),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7) 전교조(2000),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토론 자료집

8) 조선일보,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3), 1999.08.28

9) 20명의 교수들이 교실붕괴 현상에 대해 다차원의 원인규명과 대응 방향을 담은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교육과학사, 2000)는 지금 현재의 학교 문제에 대응하는 데도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 책에서 제시된 학교 위기의 원인과 대응방향에 대해서 만이라도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물적 투자가 10여 년 동안 이루어졌다면 상당 부분 우리 교육은 개선되었을 것이다.

10) 당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교육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촌지수수나 학생에 대한 폭력 등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연일 교사들의 태도와 무능, 무사안일을 공격했는데 교사집단을 교육개혁의 점진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일차적 개혁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교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증폭시켰다. 교사에 대해 사회적인 불신이 커지면 학생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 가르침을 받을 교사를 불신하게 되고 배움이 일어나야 할 곳에 신뢰가 없으면 교육도 불가능해진다. 이는 교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다르며 앞으로의 교육개혁도 이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된 교실의 위기는 학교가 앓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하여 학교를 살리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나 우리 교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결국 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준화를 교실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¹¹⁾하였고 자립형 사립고 등 평준화 해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를 활용하였다. 교실붕괴와 관련하여 교사원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학교 간, 교원 간 경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공교육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학교선택제 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하였다. 결국 학교 위기에 대한 논의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돈이 들지 않는' 학교 간, 교사 간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들 위주로 도입¹²⁾되었다. 교실붕괴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교사 개인의 자질에서 파생되는 문제라는 인식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학교의 위기는 해결되지 못하고 속앓이 형태로 침전해 있었다. 최근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업의 위기, 교권의 위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꽂아 있던 것이고 '체벌금지', '인권조례'를 계기로 이것이 언론을 통해 다시 표면화된 것이다.

2. 체벌금지, 인권조례-교사들은 왜 기쁘지 않았나

사토 마나부 교수¹³⁾는 그의 강연에서 현재 일본이나 우리나라 교사들이 처한 상황을 '저글링 묘기를 하는 교사'로 묘사한 적이 있다. 교육 정책 입안자들은 선진국에서 좋다고 하는 정책(저글링 공)을 가져와 교사에게 이것도 돌려야 한다고 던져 준다. 그것이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가 돌리고 있던 저글링 공을 빼주지는 않으면서 계속 공을 더 던져주기만 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교사들은 공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린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교사들을 정책담당자들은 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거부하는 교육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비난한다. 결국 저글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제반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채 저글링 공을 떨어뜨릴 경우 교육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이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끝으로 떨어진다. 정책입안자는 개혁을 거부하는 교사를 비난하고 교사들은 정책 입안자를 비난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향한다.

11) 조선일보, '껍데기만 남은 고교 평준화'라면, 2002.09.05

12)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대토론회-교실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 2001.

이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pp31~32)로 제시된 것 중에 교사의 권위 회복 방안으로 제시된 '수업 부담 경감'이나 '교사 중원'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석교사제'는 실시되고 있다. 또한 '단위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를 위해 학교장 중심 운영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학교장에게 인사와 재정 운영권을 부여하고 학교 교육의 성과에 대한 교장책임제를 정착시키는 것을 학교 위기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조하면서도 모순적으로 교장 중심의 운영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제발표문에서 제시된 '학교선택제',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한다고 하지만 그 근거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 주제발표문에서 인용했듯이 2000년 전교조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과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하여 71.6%가 부정적'이었고 학교붕괴의 원인으로 '주입식 교육관행'(40.0%)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의식에 부응하는 정책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당시의 교실붕괴 담론을 자신들의 교육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차원으로만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3) 도교대 교수로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 등을 지었고 배움의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체벌금지 또한 과거부터 그래왔듯이 위로부터 지시되었다.
 목적은 좋지만 학교에 꽂히는 다른 정책이 그려했듯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실질적 투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해와 투입 없이 빨리 핀란드가 되라고 다그쳤다.
 보수성향의 교육감과 진보적 교육감의 차이가 무엇인가
 결국 행태는 같고 원하는 것만 달라진 것이 아닌가 교사들은 생각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그 행태가 못마땅해 입이 나와 있었지만
 인권강사는 교사들이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¹⁴⁾.

체벌금지가 자의적 체벌행사를 통해 일어날 수 있었던 인권침해를 일시에 중단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이미 체벌이 과거와 달리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교사에 의한 체벌이외에 학생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심각한 형태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균형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적절하게 따라주지 못했다. 구성원간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교한 정책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반발이 커지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체벌 이외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오히려 '체벌금지정책' 자체가 원인으로 지목받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방해 행위 등을 하는 소수 학생들에게 '체벌금지'의 메시지는 '자신이 어떻게 하든 선생님이 나를 혼낼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되어 문제행동을 강화시켜 수업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00년대 초 자신의 교실을 공개하며 학교가 겪고 있는 위기를 사회적으로 풀어보고자 했던 교사들은 교실붕괴를 교사 개인의 자질문제로 환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혼자 혹은 동료교사들과의 속앓이로 품어버렸던 문제들을 다시 표면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교실위기의 원인을 교사 개인의 자질이 아닌 체벌금지정책으로 돌리고 있는 분위기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2000년 초부터 학교의 위기 문제는 심각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학교가 겪는 위기의 원인을 체벌금지정책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말하자면 체벌을 다시 허용한다고 해서 학교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하나 하나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체벌금지정책을 실시한 교육감에게 돌리고 있다. 기준에 학교의 위기를 '교사의 자질'문제로 환원했던 사고습관과 다를 게 없다.

교육감만 바뀌면, 체벌만 허용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사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교사들은 그동안 위로부터의 명령만 받는 힘없는 수동적 존재라는 체념을 안고 살아왔다. 여기에 익숙해진 교사들은 위에 누군가 교육의 문제를 일시에 풀어줄 영웅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학교의 신뢰를 떨어뜨린 많은 원인들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촌지', '교사의 폭력' 문제였다. 최근에 소수의 폭력적인 학생이 교실수업을 망치고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전체 학교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도 크듯이 소수 촌지 교사와 폭력교사가 학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교육을 망치는 데 미치는 악영향 역시 파괴적이다. 전교조 출범 당시 교사들이 주도가 되어 촌지반대운동을 벌인 것은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 현장을 모르는 교육행정의 책임자가 '체벌금지'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교육 현장을 잘 아는 교사라는 교육주체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요구할 수는 없었을까. 이제라도 교사들은 체벌금지냐 허용이냐의 논의의 수준을 넘어서서 학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고 요구해야 한다. 2000년대 초처럼 언론이나 정치권이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위기의 원인을 재단하도록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이럴 경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통은 지속될 것이다. 교사들은 교사들이 말

14) 장경주, 교육감님에게 보내는 전국사회교사모임 제안사항, 2011.2

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진 이 틈을 확장시켜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의 광장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3.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고통은 다차원적- 다차원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는 여러 모로 아이들이 그리고 한편으로 교사 또한 행복하지 못한 공간이다. 학교는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교사에게, 학생에게 지금 학교란 어떤 곳인지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고 있는 고통을 세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다.

차원1. 학교는 겨울에 춥고, 여름엔 덥고 컴퓨터는 느리고 잘 고장 나고 냉온풍기에 먼지가 수북한 곳이다.

교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생과 교사 누구나 느끼는 고통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생각한다. 자신의 집, 학원, 도서관, 동사무소 어디를 가도 학교보다 열악한 곳이 없는 것 같다. 집이나 학원보다 낙후한 학교 시설은 학교가 가져야 할 권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느린 컴퓨터, 자주 고장 나는 멀티시스템-학교는 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직원이 없다. 정보부에 속한 컴퓨터 과목 교사들이 수업 외 시간에 점검하거나 직접 업체에 서비스를 부탁해야 한다. 인내심의 한계를 넘나들게 만드는 교실 냉난방 온도¹⁵⁾ 등은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학생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이다. 학생의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교칙만을 강요할 때 대다수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해 그리고 교사들에 대해 불신을 키워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가 형성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게 된다. 학교의 모든 자원은 학생들이 정규 학습시간에 쾌적하게 그리고 순조롭게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데 가장 일차적으로 쓰여야 한다. 현재 방과 후 수업이나 수업외의 특별한 학교 사업에 쓸려있는 자원 지원을 정규 학습시간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학생회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이 수렴되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차원2. 내가 입는 옷 그리고 내 몸과 머리를 내 뜻대로 꾸미는 데 있어 통제가 심하다.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문제일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면서 개인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이런 규제들은 교사들의 의견보다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견해를 수용하여 교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옷이나 머리에 대한 규제 또한 나름의 교육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형태로 교사가 아닌 학부모들과 학생대표들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함께 모아 교칙을 정하고 복장에 대한 자율적인 태도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것을 보아가면서 규제를 없애 나가는 것이 좋다고

15)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 중인 에너지 10%절약 운동은 학교 교실 공간의 면적 대비 학생 수가 35~40명에 이를 정도로 밀집해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통 사무실에서 학교 교실 공간 정도에는 7~8명도의 인원이 근무하게 된다. '일선 학교에 한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냉·난방기 가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공문(재정과-8259<2010.06.22>)이 다시 내려오긴 하였으나 공문 제목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협조'이고 공문내용을 보면 '에너지 10%절약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공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여전히 대다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찌는 더위와 씨름을 하고 있다.'

본다. 교사가 '치마단을 가위로 잘랐네, 머리를 밀었네, 옷을 압수 했네' 하는 말들이 아직도 들려온다. 이런 규제들은 학생들에게 반발심만 키우고 오히려 정작 필요한 규칙에 대한 권위를 약화시킨다. 교사들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변화시켜 학교 대다수 구성원들이 행복한 학교 분위기를 만들 어가는 것이다.

차원3. 교실공동체는 살아 있지 않고 군중심리가 작동하며 악동이 교실 분위기를 지배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모든 교실이 이렇지는 않다. 또한 학교에서 심각한 악동의 수는 대다수 일반학생들에 비해 수적으로는 매우 적다. 그러나 그들이 미치는 파장은 너무도 크다. 교사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인성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크다. 부모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아이들의 생활태도를 어릴 때부터 잡아주지 못했거나 경제력에 크게 문제가 없어도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이들의 생활태도나 인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악동들의 행동과 인성은 인성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 등을 거치면서 1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몇 번의 상담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학업성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와 물질적 이해관계로만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풍토가 맞물리면서 사람으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돋는 공동체 문화가 교실내에서도 파괴되고 있다. 악동들의 행동을 또래들의 관계를 통해 규제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살아 있지 못하고 악동에 지배되거나 악동이 한 반에 여러 명일 경우 군중심리가 작동하여 더 나쁜 행동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정작 남에게 심한 욕을 할 수 없는 아이들,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주위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악동들의 행동에 대해 '그래서는 안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분위기에서 말없이 고통을 삭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그래서 악동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고통의 세 차원 외에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다. 2000년 초 교실붕괴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관행(40.0%)'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교과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교과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하여 71.6%가 부정적'¹⁶⁾이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내용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심리적인 동의를 보내고 있지 못하다면 교육에 필요한 권위가 서기 힘들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이 펴낸 〈교과서를 믿지 마라〉는 현재의 교육과정과 이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가 어떤 고통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아이들이 즐거울 수 있는 수업으로 변하려면 수업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는 교과서, 교과서를 규정하는 교육과정, 수업내용을 역으로 규정하게 되는 평가의 방법을 동시적으로 바꿔가야 한다. 학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교과서-수업-평가 부분에 대한 대안도 다른 나라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4. 학생지도와 관련한 근본대안부터 고민하자

학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들은 쌓여 있다. 체벌금지 정책으로 학교 위기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조선일보 등의 보수적 성격의 언론에서는 학교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업권 침해,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보도하고 있는데 그 대안에 있어서는 교사의 체벌에서의 자율권 이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 등 진보적 성격의 언론에서는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과도기적 현상 정도¹⁷⁾로 다루는 한계를 보여 준다. 과연 아래와 같은 사례가 교사에게 체벌권을 돌려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혹은 과도 기적 현상으로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지 사안에 대한 심층 분석,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다른 나라의 상황과 제도에 대한 심층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¹⁸⁾ (S 중학교 1학년 **이 속해 있는 반은 심각하게 수업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이 6명 정도가 몰려있어 다른 반과 수업분위기가 매우 대조적이며 이 반에 들어가는 모든 교사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A교사: **이는 수업 중 줄곧 친구들과 떠들고 수업에 참여를 잘 못합니다. 수업 중 떠드는 친구의 말에 꼬박꼬박 대꾸하거나 웃거나 하는 반응을 보여 수업 분위기를 견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하는 일은 아니고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과 같이 하는 일입니다. 지적을 하면 반성 없는 언행으로 선생님과 언쟁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당연한 일인 듯 "그냥 본 건데요. 전 아닌데요. 애가 말한 건데요..." 등 자신이 한 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상을 붙여 친구와 떠들어 책상을 앞으로 밀라고 하면 책상만 밀고 의자는 그냥 그 자리에 둔다든지 아님 친구와 같이 책상을 앞으로 이동한다든지... 교사가 지시하는 내용과 이유를 잘 알면서도 자기의 행동을 고집하여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의 평정심을 시험합니다. 얼마 전 수업에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다른 과목 책을 보란 듯이 펴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과목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뒤 쪽에 있는 부록 같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어 집어넣으라 했더니 학습지 아래에 넣고 또 보고, 그래서 뺏어 놓았더니 그건 친구 것이라며 자기 것을 또 꺼내서 똑같이 펴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지도에 불응하며 대응하는 방식이 매우 반항적이고 교사의 평정심을 훼손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중 매번 이런 실랑이를 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수업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이 점을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이의 행동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B교사: **학생은 수업시간에 교사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큰소리로 잡담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지적을 해도 반성의 기색이 별로 없어서, 교사 스스로 투명인간이 된 듯한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엎드려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경우에 지적을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이것은 **학생 개인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학급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수업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저해시키는 악영향을 줍니다.

C교사: **학생이 계속해서 수업시간에도 늦게 들어가고 무단 결과도 하고 여러 과목 선생님들께 지적도 당

16) 전교조(2000),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p7, p31

17) 한겨례신문, 교실붕괴? '괴담'의 진실은, 2011.06.30

18) S 중학교 생활지도 기록물 파일(2010)

하여서 방과 후에 면담을 하려고 하였으나 알면서도 오지 않고, 따라오는 척하다가 도망을 가 버리고, 쉬는 시간에 만나러 가면 복도에서 제가 보이면 도망을 가고, 심지어는 면담 중에 청소지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장래희망을 생각해보라고 하면 누가 그런 걸 생각하냐고 대들고 면담을 하여도 질문에 제대로 답도 하지 않고 '모르겠다'와 '싫다'는 말만 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자기만큼 떠들고 자기만큼 자는데 자기만 괴롭힌다고 하면서 본인은 잘못 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모른다고 하다가 '놀고 싶은데' 합니다. 책상에 낙서를 가득 해놓고 특히 '내 짹 병신'이라고 쓰는 등 교우의 인권을 침해하여 낙서를 지우라고 하니 유성펜으로 더 낙서를 해서 빼앗았더니 왜 빼앗느냐고 저항을 하다가 수업 후에 찾아가라고 했더니 더러워서 안가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 지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학부모님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학교에 오시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후로는 부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상담실에도 의뢰하여 상담도 받게 하였으나 상담부장님께서 **학생은 상담도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려 하였으나 계속 '싫어요'라고 대들며 지도를 원치 않아 **학생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해 온 지도와는 다른 종류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지속적으로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육적 처치 자체가 불가능하고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도 오지도 않는 경우 학교는 대응 방법이 없다. 그러는 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너무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이 행위를 계속하는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분노 조절장애', '과잉 행동 장애' 등을 가진 학생들이 과거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을 심리치료전문가가 아닌 교과담당 교사들에게 다수의 일반학생과 함께 생활지도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과연 교사들에게 그리고 해당 학생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대안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5. 체벌을 대체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지도 규정이 필요하다

천부인권의 이론은 원래 사회보다 선행하는 개인을 상정한다. 이러한 개인에게 자유는 한계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사회집단에 속해 살아가며 그가 속한 사회집단의 목표에 따라 일정하게 행위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제한'의 내용이 인권침해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인가 혹은 그 사회집단과 그 집단이 속한 지금의 우리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끊임 없이 논의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재설정되어야 하지만 그 '제한'을 모두 없애는 것이 사회집단 구성원 모두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자는 않는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교사 1인과 학생 1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닌 공교육제도에서의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면 1인의 무한자유보장이 다른 다수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정상적인 교수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고 따라서 1인의 무한자유는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서 합의될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일정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행위를 하기 위한 권리제한의 정도를 학교 구성원들이 교칙으로 합의할 경우 이를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명확하게 규정되고 학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 규정이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합리적 '제한(규제)'을 어기는 행위를 반복해도 이를 저지할 강력한 유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상 방임상태라고밖에 할 수 없다. 현재 학교에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합

리적 '제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행위를 지속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자유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의 행동에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다른 약한 학생들에 대한 인권보장도 어렵고 교실에 민주주의적 문제해결의 문화도 자리 잡기 어렵고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교권도 지켜지기 어렵다. 과거에는 그 '제한'의 장치로 교육적 체벌을 허용했다면 이제 그것은 인권의 요청에 맞게 그리고 정의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인 제도로 재설정되고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6.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 없이 교육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법 단원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직업병이 무엇일까라고 물었다. 목을 많이 쓰고 서서 일하는 직종의 특성상 성대결절과 하지 정맥류를 염두에 두고 물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에 상관없이 '스트레스'와 '화병'을 언급했다. 교사가 받는 압력의 요인들로는 시간에 쓰기고 행정적 지원이 별로 없으며, 아이들은 더 극성스러워지고, 교육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과 기대이다¹⁹⁾. 1980년대 초 영국에서는 은퇴시기에 가까운 남성교사의 사망률이 70년대보다 2배로 증가했으며 교사의 초기 은퇴율이 3배로 증가하였고 교사들의 평균수명은 국가 평균보다 4년이 낫다는 보도가 있다²⁰⁾. 1980년대 후반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교사의 파업이 있었다. 요구조건은 봉급을 올려달라거나 근무시간을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혼율의 증가와 거칠어진 아이들로 교사가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학급이 되어 버리자 교사가 수업거부를 한 것이다. 그들의 요구는 주당 20시간에 학급당 20명을 요구한 것이다. 이를 20/20비전이라고 하였다²¹⁾.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면서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이들은 이미 가정에서 양육과정의 문제 등 상처를 안고 오는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아이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체벌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학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해답이 될 수도 없다. 지도와 관련하여 필요다면 법도 개정하고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이제 국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 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청과 연계하여 지도할 시스템 마련, 심리치료와 상담이 병행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학교규모와 학급당 학생수의 축소, 교사의 행정업무 축소 등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나눌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 돈 들이지 않고 고뇌하지 않고 값싸게 교사들에게 '막대기' 하나 쥐어주고 학교에 닥친 위기 상황을 온몸으로 막아내라고 하는 건 교사와 학생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19) 이연섭(2000), 「자라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 교육과학사

20) 위의 책, 위의 자료 p222

21) 위의 책, 위의 자료 p223에서 재인용

교실에 평화와 인권을 꽂피우기 위한 민주적 생활지도 방안

박 종 철

(전교조 학생생활국장)



II 교실에 평화와 인권을 꽂피우기 위한 민주적 생활지도 방안

박종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생활국장

많은 교육자들과 교사들은 잘못 알고 있다. 사람에 따라 허용적인 것이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도록 아이를 도와주고 그래서 비행을 중단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허용적인 교실에서 아이가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방임적인 무질서이다. 아이들은 "나는 내 자신의 일을 할 것이다."와 "그것이 날 위한 것일 때만 일 할 것이다."라는 철학을 배운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하고자 자신들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할 때 심하게 실망한다.

한편, 매우 엄격한 독재적인 교실에서, 아이들은 권력, 명성 그리고 이익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을 배운다. 이러한 독재적인 생각은 항상 갈등을 유발한다. 게다가, 청년기에 이르렀을 때, 많은 젊은이들은 이들 가치를 거부하고 반항할 것이다.²²⁾

1. 무엇이 진실인가?

경남에서 2009년 이후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교권침해 사례가 1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회 김부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 까지 경남도내 초, 중, 고교에서 교사들이 폭행과 폭언을 당한 사례가 117건에 달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창원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2009년 3월 신학기 초에 3학년 학생이 수업 중인 옆 교실 앞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교사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고 교실 구석으로 몰아붙인 뒤 욕설을 하고 교사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일이 벌어졌다. 충격을 받은 이 교사는 6개월 병가 후에 학교를 옮겼다.

창원시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지난해 10월 체벌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한 학부모가 교사의 멱살을 잡고 골프채까지 휘둘렀다.

창원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2009년 9월 수업시간에 음악을 듣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과자를 먹으면

22) 『눈물 없는 훈육』, Rudolf Dreikers 외, 최창섭 역, 원미사, 2007

서 수업방해를 하던 한 학생이 제지하는 교사에게 "닥치고 수업이나 하시죠"라고 대들었고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욕설과 함께 교사의 교수봉을 빼앗아 부러뜨리기도 했다.

김해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2009년 5월 학생이 새치기를 하다 이를 지적하는 교사에게 음식이 담긴 식판을 던져 교사가 옷을 다 버리기도 했다.

하동군의 한 중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이 여선생에게 "임신했어요?"라는 등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해 전학을 갔다.

수업 중에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는 등 교실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는 사례들도 많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김부영 도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들의 폭언, 폭행이 '내 제자니까 참는다'는 수준을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옥을 먹거나 폭행을 당한 교사의 명예는 치유가 안 될 정도로 큰 상처를 입는 만큼 도교육청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²³⁾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내뱉고, 상승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악정책연구소 '오늘'과 진보신당 관악구 당원협의회 등으로 이뤄진 'K고 폭력교사 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은 12일 오후 서울 K고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K 교사의 폭력행위를 확인하고 징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K고교에서 한 교사에 의한 지속적인 폭력이 으로 피해 학생이 10명이 넘는다"며 "학생들이 언제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탓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들은 K 교사가 지난달 4일 수업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때리고 욕설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K고 교감은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만큼 사안을 언급하기 곤란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²⁴⁾

같은 날 서로 다른 언론에 실린 두 가지 상반된 기사이다. 한쪽에서는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학생인권침해가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일까?

지난 해 서울시교육감은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올해 3월부터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인권침해 사례 또는 교권 침해 사례가 언론에 부쩍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학생이 여전히 약자이며 교권 침해보다는 학생인권 침해가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일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의 경우도 학생이 폭력 문화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체벌이 사라져야만 교권 침해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면서 그것이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접체벌은 금지하더라도 간접체벌은 허용해야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고 그래야 학생의 수업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23) 〈골프채 휘두르는 학부모, 식판 던지는 중학생…무너지는 교권〉, 2011. 7. 12 동아일보 기사

24) 〈시민단체 "학생에 폭언, 폭행 교사 징계 촉구"〉, 홍성율 기자, 2011. 7. 12 아시아투데이 기사

둘 중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진실일까? 그보다는 학생인권 침해와 교권²⁵⁾침해가 모두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약하더라도 학생인권 침해나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학생인권 보장을 주장하는 쪽도,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쪽도 현실을 한쪽에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²⁶⁾

2. 교과부와 교총의 접근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가. 체벌을 금지했기 때문에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는가?

교과부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교권추락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체벌금지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었고 "체벌금지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체벌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존"하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은 허용"하겠다고 했다.²⁷⁾

교총 역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가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하고 있다면서 간접체벌 등의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교총은 서울, 경기의 자기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원 대다수가 문제학생 지도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²⁸⁾

찬찬히 생각해 보자. 체벌 금지 때문에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학생이 교사를 공격하는 사건이 늘어난 걸까? 체벌 금지 조치 이전에도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은 많았고 학생의 교사 공격 사건도 종종 있어왔다. 교과부와 교총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체벌금지에 둠으로써 구태의연한 통제와 억압적 지도 방식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

물론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학생 중에는 체벌금지를 악용하는 학생이 있고 그것이 학급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 하지만 체벌금지 이후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본격화되었다고 하거나 체벌금지가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전교조는 90년대 말에 이미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일부 학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²⁹⁾ 아무리 깨워도 자는 아이들, 수업시간임에도 돌아다니는 아이, 교육적 지도에 대한 불응, 학교폭력의 심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 시기는 교사를 지식의 공급자로, 학부모와 학생을 수요자로 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사의 사회적 권위는 무너졌다.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법적 권한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다만 이전에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았다. 국가가 절대적 권력을 휘둘렀던 것처럼 교사도 교실에서 절대적 권리자였다. 교사가 학생을 끌고

25) '교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 '교권 추락'이라고 할 때의 교권은 교사의 사회적 권위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면 그 때의 교권은 교사의 인권을 말하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그 행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나 그 학생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면 이는 교사의 직무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교권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권』(박종철, 생활교육혁신 연속토론회 1회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26) 전교조는 2011년 9월에 학생, 교사, 학부모가 각각 교육현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를 통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7)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선진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2011. 1. 18

28) [체벌금지 ■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교사의 열정과 사명감, "크게 흔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1. 4. 20

29) 『학교붕괴』,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회, 푸른나무, 1999

차고 뺨을 때려도 '사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인정받았고 어떤 학부모들은 "더 때려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교사의 체벌이 '사랑의 매'가 아니라 폭행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학부모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숨죽여야만 했다. 그러나 수요자(소비자)가 된 학부모는 더 이상 교사의 절대적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학원과 학교를 비교하고 스스로는 용의복장 지도를 못하면서도 학교에는 요구한다. 문제가 생기면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면서 교사와 상의하기보다는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나 교사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학부모들도 상처를 입는다.

한편 학생에게서는 병리적 현상이 나타났다. 강남 학부모들의 지나친 보호 속에서 자란 학생들은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수강신청을 부모가 대신해주고 심지어 보고서도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가 들린다. 강남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조율중에 시달리는 시한폭탄 같은 아이들이 많다고 말한다. 반면 부모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라는 학생들도 점점 많아졌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소동을 벌이고 누군가를 괴롭힌다. 희망이 없으니 엎드려 자고 알바해서 번 돈을 노는데 쓴다. 교사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학생 사이에서 자기 권력을 확인한다.

강남 학부모의 자녀든 부모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든 타인과 평화롭게 관계 맷을 줄 모른다. 따돌리거나 폭행하거나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³⁰⁾가 되어 관계 맷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것은 체벌금지나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권리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권위가 들어서지 못했고 학생은 가정과 사회와 학교에서 방치되거나 지나친 보호에 갇히면서 무기력, 공격성, 우울증을 보이게 됐다.

나. 교총과 조전혁의 합작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안)〉 약평

2009년 7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외 15인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교총과의 협의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교총 안양옥 회장은 2011. 7. 7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항이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 목적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겠다.

이 법은 제1조(목적)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 현실에 대한 발의자들의 인식을 담고 있다. 그들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은 정확하고 균형 잡힌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어느 한 쪽에서 보는 현실만이 현실의 전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경우가 그렇다. 예를 들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학부모 전체를 잠재적 교권 침해자로 규정하고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법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교원'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 교원은 교사, 교장, 교감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관리자인 교장, 교감과 교사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다. 교사는 학생과 일상적으로 대면하면서 생활지도를 하고 교과지도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여기에 행정업무도

30) 일본에서는 '히끼꼬모리'라고 표현하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맡고 있다. 하지만 교장, 교감은 생활지도와 교과지도가 주된 업무가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장의 임무는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다. 교감의 임무는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다. 교장, 교감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교사와 이해관계가 다르다.

얼마 전 울산에서 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여 얼굴뼈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지만 학교장은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학교장이 문제를 감추려 한 이유는 교사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장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과 학교의 제면이지 교사의 인권이 아니었던 것이다.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에 울산에서처럼 학교장이 문제를 감추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학교현장에서 권리 침해를 겪는 사람은 주로 교사이지 관리자가 아니다. 이 법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사와 관리자가 마치 동등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 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무엇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당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생들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니 그것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메시지는 매우 선명하고 간략하다. 그러나 이 같은 피상적인 대책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보다는 학생들에게서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는지, 그것이 다른 학생과 교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체벌은 90년대 말부터 심화되어 온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일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해가 갈수록 점차 심각해졌다. 체벌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도 있다.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월 10일 영국 언론은 영국 정부가 '노터치' 정책을 폐기했다고 발표했다.³¹⁾ 이는 영국의 학교 역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미국의 경우에도 교사의 권리에 의해 유지되던 질서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민주적 질서가 들어서지 못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

31) 우리 언론들은 이 기사를 인용하여 "영국 학교 교사 체벌권 부활" 등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노터치' 제도는 교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의 신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악기를 가르치거나 격려를 할 때도 어깨나 팔 등에 손을 대지 못하게 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폐기한 것이지 체벌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영국 교육부가 발표한 훈육지침에는 "물리력은 체벌의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한 편 이 지침은 "학생이 학교 행사를 방해하려 하거나, 교실을 마음대로 나가려 하거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만한 행동 등을 할 때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기도 한데 이는 영국에서도 생활지도에 일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해준다. (참고자료 - 〈중앙·동아 "영국, 체벌 허용" 보도는 오보〉, 허재현 기자, 한겨례신문 2011. 7. 15일자 기사)

사가 많다고 한다.³²⁾ 독일의 Fritz Wandel이라는 학자는 이미 1990년대 중반에 『학교가 환자를 만드는가?』라는 제목의 저서를 통해 독일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했다.

그런데 위 국가들은 피상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러한 문제가 왜 나타나는지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최근 학생들에 게서 우울증, 무기력, 공격성(학생에 대한 공격과 교사에 대한 공격)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사회적 현상이지 특정 개인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은 평화로운 관계를 파괴하고 권력적 관계를 형성한다. 관계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스스로 관계 맷기를 거부하고 자폐적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권력 관계의 정점에 서 있는 학생들도 안정된 소속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피상적인 대책들만 도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교사상이 바뀌어야 한다.

흔히들 교사를 지식 전달자로 여긴다. 지식을 학생의 발달 단계와 수준에 맞게 재조직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여긴다. 최근에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의 배움을 안내하고 조직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자든 후자든 '학교는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통제', '억압'이라는 단어와 함께 떠올리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전통적 의미의 '생활지도'가 아닌 '생활교육'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생활교육'은 교과교육과 동등한 지위를 갖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또한 전통적인 생활지도 영역을 포괄하되 통제적 지도방식을 최소화하고 성찰과 소통을 중시한다.

'생활교육'을 교사의 중요한 역할로 둔다는 것은 교사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는 교사를 '생활교육 전문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교사는 스스로에 대해서 '학생집단의 민주적 지도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나 교육청은 교사가 생활교육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생활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4. 교실에 평화와 인권을 꽂피우기 위한 대안

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규정 마련

1)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교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다. 자기에게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교사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은 없다. 다만 과거에는 법적 권리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과거에는 교사의 교실 권리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교사가 생활지도를 시도했을 때 학생이 지도에 잘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이 지도

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학생이 있다고 치자. 이를 본 교사는 학생에게 통화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학생은 지시에 따르지 않고 통화를 계속 했다. 화가 난 교사는 휴대폰을 압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은 왜 맘대로 핸드폰을 가져 가냐고 하면서 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교사는 '교사 지도 불응'을 이유로 징계를 하겠다며 생활지도부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고 학생은 징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따라가기를 거부한다.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학생은 징계를 받는다 해도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교사를 이겼다면서 자랑스러워하기도 한다. 때로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가 부당행위를 했다면서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면서 오히려 교사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교사에게 생활지도 권한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대개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휴대폰 사용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교사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다. 교사는 학생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의뢰할 수 있을 뿐이다. 막상 학교에서 징계 절차를 밟을 때 학부모는 지도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징계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런 경험을 몇 차례 하게 되면 교사도 지도를 회피하게 되고 생활지도부에서도 적당히 넘어가게 된다. 또는 본보기를 세운다면 과도하게 징계를 하는 학교도 있다.

학교생활규정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 사용 시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학생이 "왜 맘대로 핸드폰을 가져 가냐?"고 말할 수 없다.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그런 말을 하면서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 때 절차에 따라 성찰교실에 갈 것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면 된다. 교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한에 따라서 학생을 지도했을 때 학부모가 교사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사가 자기의 생활지도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경우 월권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인권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수업 방해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학생에 대해서 교실 뒤에 서 있도록 지시하는 것은 해당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 일수도 있고 오래도록 서 있게 될 경우 그 학생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다른 학생의 인권과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교사의 권력도 약해졌고 교사-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공급자-소비자로 바뀌면서 교사의 사회적 권위 또한 약해졌다. 교사가 행사해 온 부당한 권리가 해체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사의 전문적 권리가 실추된 것은 문제가 있다. 학부모는 한 편으로는 전통적인 생활지도를 교사에게 요구하면서도 자기 자녀가 잘못하여 징계를 받게 되면 교사를 공격하기도 한다. 물론 여전히 다수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어려워하고 교사의 지도를 존중해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위치에 선 학부모가 언제든 교사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부당한 공격일 때 교사가 보호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교사의 권리가 여전히 과거처럼 절대적이라고 가정하는 듯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가지고 교사가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단정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두고 교사의 권리가 여전히 절대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옳지 못하다. 그보다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인권 침해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할 기준이 없는 상황을 문제 삼아야 한다.

32) 위에서 언급한 『눈물 없는 훈육』에서 그 같은 현실을 엿볼 수 있다.

2) 교사의 지도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의 예

별지 제4호-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1. 취지

학생들이 수업규칙을 어겨서 수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한다.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가 자신의 권리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정한다. 이 규정에서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시정조치, 상담 및 대화, 징벌적 조치, 대벌로 한정한다.

2. 교사가 할 수 있는 조치

가. 시정 조치

1) 자리 배치 : 본시 교사는 학생의 책걸상의 위치나 자리배치가 수업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면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수업환경 조성 : 온도, 소음 등 교실이나 주변 환경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될 때는 교사는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한 환경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자세 교정

가) 학생의 수업자세가 불량하거나 줄거나 잠을 자면 본시 교사는 자세를 교정시켜야 한다.

나) 학생의 복장이 수업규칙에 맞는 복장이 아닌 경우 본시 교사는 복장을 교정시켜야 한다.

4) 불량행위 중단 및 도구 사용 금지

학생들이 수업과 무관한 발언, 교실 안팎에서 수업 중 이동, 교재 이외의 것을 보거나 듣는 경우 본시 교사는 그런 행동을 금지시키고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5) 학생이 거짓말이나 평계를 대는 경우, 시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교사의 시정요구에 대해 거짓말, 평계를 대거나 시정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사는 동일한 시정요구를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요구를 반복해도 학생이 교정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면 본시 교사는 그 다음으로 학생 상담 및 대화,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학생 상담 및 대화 : 상담 시 상담기록부를 비치 및 기록할 수 있다.

- 수업 중 교실에서의 상담 및 대화
- 교무실에서의 상담 및 대화
- 상담실에서의 상담 및 대화
- 기타 장소에서의 상담 및 대화

다. 징벌적 조치

1) 자기 자리에서 서 있기: 지속 시간은 본시 교사가 정한다.

2) 교실 앞이나 뒤에서 앉거나 서서 벽면 바라보기: 지속 시간은 본시 교사가 정한다.

3) 교실 앞이나 뒤에 서서 수업 경청하기: 지속 시간은 본시 교사가 정한다.

4) 생각 의자에 앉기: 지속 시간은 본시 교사가 정한다.

4) 반성문 작성

5) 앱 수 : 핸드폰이나 엠피쓰리 등 전자기기의 사용 시

6) 교실 밖 격리: 성찰교실 프로그램 참여

방과 중 자기주도 학습 실시

방과 후 잔류지도

7)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지도 불응 시 징계를 경고하고,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관리자(교장)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면담, 상담한다.

라. 학생 징계 요구 :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학생선도 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마. 대 벌 : 교사와 학생의 합의에 의하여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며, 이 경우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것도 가능하다.

3. 학생의 권리

-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가. 학생은 조치를 우선적으로 집행한 이후, 수업이 끝난 후 교사에게 사유를 공손히 말한다.

나. 학생은 교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도 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 학생이 교사에게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교사의 조치를 집행하기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교사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라.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교사가 인정하는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사과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사과할 수 있다.

마.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학생이 교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때 불손한 언행을 하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서울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의 학생선도규정 일부이다. 여기에는 <수업 규칙>이 있고 학생이 그것을 어길 시 교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위에서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별 내용 하나하나가 올바른지를 보기보다는 교사의 지도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주기 바란다.

3) 규정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

법이든 학교 규정이든 그것의 적용을 받는 주체들의 합의가 없으면 권위를 인정받기 어렵다. 권위가 없는 법이나 규정은 누군가에게 악용되거나 현실적인 규정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현실적인 규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사나 학생에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권위가 없으면 교사는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일부 학생은 그것을 자기의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다.

학교 규정이 권위가 있으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합의에 의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사의 생활지도에 권위가 부여된다. 그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임의로 거부하기 어려운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제·개정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들은 자기의 의견을 밝히고 대표로 선출되어야 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방송 등을 통해 전교생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제·개정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승인해야 한다. 승인하지 않을 경우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규정이 제·개정된 이후엔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조항의 의미, 조항이 만들어진 맥락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 그 규정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나.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구조 만들기

수업시간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담임이 전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담임이 홀로 해결해야 한다. 물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생활지도부에서 개입하기도 하지만 그 경우 담임교사나 교과담임은 개입을 차단당하고 지켜보기만 해야 할 때가 많다. 생활지도부와 교사가 문제 해결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이 일으키는 문제 중에서는 담임교사 개인의 지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다. 얼마 전 친한 선생님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냥 나가버린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학교 다니기를 싫어하는 학생은 아니라고 한다. 담임교사가 잘 타이른다고 해서 이 학생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 학생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라면 단시간에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담교사, 생활지도부, 관리자,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야 해결 가능성이 커진다.

1) 생활지도부

학생의 징계를 의결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생활지도부는 독자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 상담교사와 함께 의논하여 처리해야 한다. 상담교사는 선도위원회가 열리기 전 필수적으로 해당학생의 상담을 실시한다. 담임교사, 상담교사, 징계 담당교사가 모여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생활지도부장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교내봉사 이내의 징계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소선도위원회 개최를 결정한다.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교감에게 선도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소선도위원회의 구성원은 담임교사, 상담교사, 징계 담당교사, 학년부장, 생활지도부장으로 하며 교내봉사 이내의 징계를 의결한다.

선도위원회는 소선도위원회 구성원에 학부모 위원, 교감을 포함한다.

소선도위원회를 따로 두어 징계 절차를 단계화 하는 이유는 징계 과정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최근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일 이내의 출석정지(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 기간에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를 징계 양정에 포함시켰다. 이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이 많다는 판단 하에 특별교육이수보다는 강하고 퇴학보다는 약한 단계의 징계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징계 과정에 권위가 부여될지는 미지수이다. 특별교육이수와 출석정지의 차이점은 징계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학교에서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소선도위원회와 선도위원회로 단계화하는 것이 징계 과정에 권위를 부여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단계화하는 것도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어쨌든 점점 더 강력한 징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징계 '과정'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생활지도부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복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는 급식지원, 학비지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생활지도, 선도활동을 하다보면 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편부, 편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경우 보호자가 생업에 바빠서 학생의 방과 후 시간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생활지도부는 복지가 필요한 학생들과 외부 기관을 적절히 연결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외부기관은 학생의 상황에 대해 학교와 소통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 당장에 학교마다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기 어렵다면 두 세 학교 당 한 명이라도 배치하는 것이 좋고 그도 어렵다면 교사 중 한 사람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생활지도부 구조 체계도 예시

복지 담당자	생활복지부		선도 담당교사
	복지	생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업홍보 - 지역교육협의회 참석 - 지역자원활용 - 가정지원 - 학생 생활환경 지원 - 담임교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개입/상담 - 지역사회네트워크 - 가정지원 - 학생 생활환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인권 - 징계 - 학교폭력 - 가해자/피해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징계 - 교사의 정당한 통제권 확보 - 징계 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사건 조사 - 담임교사 지원 - 폭력 사건 중재 - 학교폭력 대책자 치위원회 - 폭력 피해자/ 가해자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자치활동 지원 - 학생회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학생회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 학생인권 신장

2) 상담부

상담의 역할은 학생들이 상처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상담이론, 상담방법 등이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과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학교 상황에 맞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 교과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대책,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방안 등을 발표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상담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전문상담교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야 환영할만한 것이지만 상담 역량은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아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아마도 교과부나 교육청 역시 상담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가) 상담부의 역할

■ 학교가 상담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대개 상담은 내담자가 상담을 요청함으로써 이뤄진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경우 정작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상담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폭력의 경우를 예로 들면 피해학생은 자신의 고통을 철저히 감춘다. 그것이 드러날 경우 더 심한 따돌림을 당할 것이라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자기 고통을 감춤으로써 피해자는 더 심한 고통을 겪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미술시간에 조각도로 가해학생을 찌른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자기 고통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상담은 상담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 지각, 결석이 잦은 학생에 대해서 상담한다.

– 전입생에 대해서는 전입 직후, 전입 한 달 후, 전입 한 학기 후에 상담한다.

– 수련회나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상담한다.

– 흡연 학생에 대해 상담한다.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해 상담한다.

■ 부적응,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

진로상담이 학교상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상담의 역할은 부적응과 학교폭력(학생 간 갈등)에 대한 상담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복잡하게 얹혀 있는 경우도 많다. 학교를 다니기 싫다면서 자퇴한 학생이 그 뒤에도 가해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뒤늦게 문제의 진실이 드러난 일도 있었다. 혹시 부적응 문제가 친구와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풀어질 수도 있다.

학생 간 갈등이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넘어서 화해, 조정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상담교사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파악해야 하고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성찰교실 운영

서울에서는 성찰교실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고 다른 몇 개 지역에서도 성찰교실과 비슷한 형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성찰교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수업 상황이나 생활지도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갈등이 고조될 때 갈등 상황을 종료시키고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의 자기 성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성찰교실은 사안별, 단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성찰교실에서 잠시 마음을 안정시킨 뒤 돌아가도 되는 경우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학생의 부모와도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성찰교실의 운영이 효과적이려면 어떤 상황에서 학생을 성찰교실에 보낼 것인지 교사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다.³³⁾

■ 심리 검사

진로상담 관련 심리 검사, 인성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개의 학교에서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후 상담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사후 상담을 진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둘 다 일 수도 있겠다. 사후 상담프로그램이 풍부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상담부의 강화를 통해 사후 상담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친교 동아리 운영

갈등이나 폭력, 부적응을 줄이기 위해 상담부가 직접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친교 동아리를 만들고 가능하다면 각 학급에 1~2인이 골고루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³⁴⁾ 상담부는 친교 동아리 구성원(친교위원)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활동 결과를 수합하여 상담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친교위원의 역할은 첫째, 담임교사와 학급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교사에게 고자질하는 것과는 다르다. 아이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친교위원의 활동이 고자질이 되지 않으려면 친교위원은 학급 친구들에게 학급 문제에 대해 직접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상담부는 친교위원의 역량을 키워주어야 하고, 담임교사는 학급 내 갈등 문제를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친교위원들은 우정을 가꾸기 위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학급 단합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또한 친구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학급 내 갈등³⁵⁾이 발생하면 친교위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학급 솔루션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친교위원은 학급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담임교사는 학급솔루션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고 필요에 따라 솔루션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맡길 수도 있다. 친교위원이나 담임교사는 필요하다면 학급솔루션위원회에 상담교사가 배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친교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학교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33) EBS에서 지난해 8월 30일에 방영한 [세계의 교육현장 – 학교 안에 해답이 있다.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보면 성찰교실의 운영에 대해 참고할 수 있다.

34) 그러나 강제로 학급당 1인씩을 배치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지양한다.

35)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 내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심의하고 학교장은 담임교사 차원의 지도, 선도위원회 회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등을 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학급 차원의 갈등 중재가 가능한 경우는 1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학급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2 담임교사 차원에서 지도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다.

'우리학교는 따돌림,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우리학교는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학생을 돋는구나.', '우리학교는 공부와 경쟁만 강요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고 감춰진 문제들은 드러날 것이다.

(나) 상담부의 업무 체계

학교에 따라 상담부가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생활지도부에 상담교사가 속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담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추세로 볼 때 상담은 독립적인 부서체계로 존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생활지도부와 상담부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상담은 교사의 지도 전후로 의무화되거나 조건화되어야 하고 징계 과정이나 징계 이후에 의무화되어야 한다.

전문상담교사 혼자서 위에 제시한 역할을 모두 감당해내는 것은 무리이다. 전문상담교사가 학교 당 2~3명 정도 배치되거나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인, 사회복지사 1인이 함께 배치된다면 더 좋겠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좀 더 현실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

직책	업무
상담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상담부 업무 총괄 - 상담실, 성찰교실 운영 책임
전문상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실, 성찰교실 운영 - 진로 검사, 인성 검사 및 사후 상담 - 지역상담기관과의 연계 - 친교 동아리 운영 - 학년 상담교사가 하기 어려운 전문 상담 -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정도 판단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지도 방향 협의 -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년 상담교사와 함께 가해자/피해자 프로그램 운영
학년 상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중등의 경우 학년별 1인, 초등의 경우 2개 학년 당 1인) - 해당 학년 학생에 대한 기초 상담 - 해당 학년 학생에 대한 일상적인 상담(친구와의 갈등, 교사와의 갈등, 부적응, 성적, 균태불량, 전입, 징계 등) - 전문상담교사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프로그램 운영

상담부장과 학년 상담교사는 일반 교사 중에서 맡되 상담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상담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비담임교사여야 하고 주당 평균 수업시수를 4시간 정도 감해주어야 한다.

성찰교실 운영은 전문상담교사:상담부장:관리자(교감)가 4:3:3 정도의 비율로 맡는다. 성찰교실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성찰교실 담당자가 도맡아서 운영하면 된다.

학교폭력 사안 등 당장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학년 상담교사가 1차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교사에게 인계한다.

다. 교사의 민주적 지도 역량 강화

위에서 예로 들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에게서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이 없다면 생활지도부에 징계를 의뢰해야 하겠지만 교사에게 민주적 지도 역량이 있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사회가 '생활지도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사 스스로 그러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처럼 학생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 지도하는 것은 이미 가능하지도 않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대처하는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인 경우가 많다. 첫째, 학생이 지시에 따를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경우이다. 교사가 언성을 높일 때 학생이 지시에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어쩌라고요."라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쯤 되면 교사도 이성을 잃기 쉽다. "너 지금 욕했니?"라고 화내는 교사에게 학생은 "선생님한테 한 거 아닌데요. 혼잣말인데요."라고 받아친다. 결국 교사는 학생을 생활지도부에 인계하고 '교사지도 불응'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다.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는 다른 교사들이 '저런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서 생활지도부 까지 애를 데리고 오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수치스러워한다. 둘째,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교사도 있다. 이런 교사는 잘못을 인정받으려고 해봐야 자기 꼴만 우스워지기 십상이라고 생각하거나 수업을 듣지 않아 손해 보는 건 학생일 뿐이라며 자위한다.

첫 번째 경우에도, 두 번째 경우에도 교사는 실패한다. 두 방식 모두 학생의 반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학생들 사이에서 교사는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교실에서 종종 연출되는 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대체로 교사를 희생양 삼아 학생 사이에서 자신의 권력을 확인한다.

즉시 잘못을 인정받으려 하는 태도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태도도 교사를 실패하게 한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교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어떤 학생이 교사의 교육적 지도에 따르지 않는 순간 그 문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급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관중(주변학생)을 의식한다. 학생이 교사를 곤경에 빠뜨려 학급 친구들에게 힘을 과시하려 했건 특별한 의도가 없었건 간에 그 학생은 주변 학생을 의식한다. 만약 자기가 물러서면 친구들이 자기를 비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친화적 대화법(나-전달법이나 비폭력대화 등)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며 교사는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급 집단의 역동을 고려하여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1) Fritz Wandel이 제시하는 해법 – 학생이 원하는 것을 주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Fritz Wandel은 학생이 원하는 것을 주라고 말한다. 학생이 원하는 것을 주라는 얘기는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얘기다. 즉, 교사 대 학생의 갈등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갈등이 고조되면 교사가 실패할 가능성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교사 대 학생의 갈등 구도가 형성되면 이제 갈등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급 전체의 문제가 된다. 교사와 학생은 링 위의 선수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학생들은 관중이 된다. 교사와 학생이 링 위의 선수가 되는 것은 이미 교사가 실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링 위에서의 선수 대 선수와의 관계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긴다. 학생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것 역시 교사의 실패를 보여주는 일이 아닌

가? 학생이 원하는 것을 주라는 것은 학생이 자기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얘기는 아니다. 교사가 학생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일단은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두라는 얘기다.

"정호야. 선생님은 네가 물러서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빼앗기면 속된 말로 쪽팔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네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야. 마음 좀 가라앉히고 나서 수업을 들어주길 바란다. 네가 휴대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처럼 얘기한 뒤 5~10분 정도 학생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수업을 진행한다. 물론 그 뒤에도 계속 학생이 의도적으로 수업을 거부한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학생에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살펴주는 것이 좋다.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을 수도 있고 뭔가 굉장히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을 할 때는 비꼬는 듯한 말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2) 한 걸음 더 나아가서 –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자.

지켜보고 있는 학생들도 문제 학생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학생들은 옳고 그름보다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데 집중한다. 지켜보고 있는 학생들을 상황에 끌어들임으로써 관중의 위치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관심을 옳고 그름 쪽으로 돌릴 수 있다.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러다보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요. 선생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호가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당황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불쾌하기도 해요. 선생님이 잘못한 건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교사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학생들은 정호의 편을 들 수 없고 정호도 그것을 느끼게 된다. 정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더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수업을 시작하면서 정호에게 마음을 정리할 약간의 여유를 주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

라. 교실에 평화와 인권을 꽂피우기 위하여 교육청이 해야 할 일

1) 교사의 생활지도 역량 강화

교육청은 교사가 생활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원 양성 과정에는 생활교육을 배우는 교육과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비교사들은 교과 지식과 교수법에 대해서만 배운다. 교육심리학을 배우지만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교사가 생활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학급 회의 지도, 학급 행사 지도, 따돌림 폭력 없는 학급 만들기, 집단 역동을 고려한 생활지도, 학생회 지도, 동아리 지도, 학부모 면담법 등에 대해 교사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연수해 주어야 한다. 교사들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공부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2) 생활지도 권한이 명시된 학교 규정 예시안 보급

교육청은 학교 규정에 교사의 지도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예시안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각 학교에서는 예시안을 바탕으로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되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체벌 등)을 삽입해서는 안 된다.

3) 협력적 문제 해결 구조 예시안 보급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조건 조성

교육청은 협력적 문제 해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물리적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학교에 상담교사(상담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하고 당장에 그것이 어렵다면 교사 중에서 담당자를 두되 담임을 맡지 않도록 하고 수업시수를 줄여주어야 한다. 담당교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연수도 실시해야 한다.
- 상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교과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대책,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방안 등을 발표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상담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전문상담교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야 환영할만한 것이지만 상담 역량은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아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 지역 사회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유관기관 협의체 마련, 지역교육청과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 마련, 학교와 학교 주변 유관기관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
- 생활지도에 대한 관리자의 권한과 책무를 동시에 강화하고 교육청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 선도 담당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비담임이어야 하고 수업 시수도 일부 줄여주어야 한다.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대신 담임교사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기간 동안의 특별교육을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보낼 기관이 없거나 대기 기간이 길어서 사회봉사 처분을 내리고도 교내봉사로 대체하는 학교가 많다. 이렇게 되면 징계는 권위를 상실하고 학생은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특별교육의 질 관리도 중요하다. 교내봉사 프로그램만 못한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많다.

4) 유의미한 통계 자료 만들기

교육청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의미한 통계자료(설문조사 결과)를 매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생활지도의 담당자인 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학생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5)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에서 언급한 <교사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은 각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6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발간한 『인권친화적 생활교육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가이드북』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최근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 교사가 피해자인 경우 교사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 법적 해결보다는 교육적 해결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법적 해결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 쉽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분쟁조정위원회]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권력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학교 단위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위원 중에 분쟁 당사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객관적인 분쟁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분쟁조정 제도가 현실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정 결과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분쟁조정 제도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분쟁조정이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분쟁 당사자가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

- 학부모나 학생의 교권침해가 형사적 차원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청이 학부모나 학생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교육감은 사실 조사 후 필요하다면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법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학부모나 학생의 교권침해로 인해 민사적 보상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상액 및 방법에 대해 조정 결정을 내린다. 만약 학부모나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교육청은 소송에 대해 교사를 조력한다.
- 교사의 학생인권침해로 인해 민사적 보상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상액 및 방법에 대해 조정 결정을 내린다. 만약 교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교육청은 소송에 대해 학부모(학생)를 조력한다.
- 교원의 비위나 과실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그 수준이 징계를 해야 할 정도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감에게 교사의 징계를 권고한다. 권고를 받으면 교육감은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교사를 징계해야 한다. 징계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학생의 교권침해 행동이 밝혀지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권고한다. 권고를 받은 학교장은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학생을 징계해야 한다.³⁶⁾ 징계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6) 별도의 교육기관 마련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전학 조치를 징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 떠넘기는 것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교사 인권 침해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해야 할 때가 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퇴학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보호 및 재발 방지, 비행의 전파 방지,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육기관³⁷⁾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은 관내 여러 지역에 별도의 교육기관을 마련하고 주변 학교에서 교육을 의뢰할 경우 적극 수용해야 한다.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학생이 별도의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가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의 교육 이후 원적교 복귀, 타학교 전학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 때 원적교로 복귀할지 타학교로 전학을 갈지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은 피해자의 수용여부이다. 두 번째로는 학생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교육을 받은 뒤에도 일반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꺼리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교육기관이나 다른 대안교육기관에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한다.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은 출석을 인정해주되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아 온 학생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별도의 교육기관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하고 교육기간 동안 학생의 소속 학교 담임교사에게 학생의 상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36)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대책 제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의 내용을 수정, 보완함.

37) 별도의 교육기관에 대해 "대안학교"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반적으로 "대안 학교"는 공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및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학교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생활지도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지 윤 섭

(영훈고등학교 교사)



III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생활지도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지 윤 섭/영훈고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학교 현장에 가면, 대다수의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체벌전면금지 이후 교권추락, 학습권침해 등의 문제가 전면 부상하고 있다. 이는 비단 학교 내 문제만이 아니라, 학부모까지 포함되는 학교의 총체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한 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수업태도가 바르지 못하고 기물 파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벌을 세웠다고 하는데, 해당 학생은 집에 가서 자기의 잘못을 한마디도 안 하고 교사가 자기 만 벌준다고 말하였고, 이에 홍분한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욕을 하고 교사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교사는 이런 호소까지 했다. "수업 시간에 늘 딴 짓하거나 졸고 교사들을 은근히 능멸하는 학생들이 교원능력평가에서 학교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모욕적이다. 그런 학생들로부터 교사들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보다 더 큰 교권 침해가 있는가?"

이런 상황은 학교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 생활지도에 손을 놓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학교는 무정부상태다. 오죽하면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이 지나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로 부터 교사가 폭력을 당하는 시대가 올까 두렵다. 예의가 사라지고 인성이 사라지는 시대의 무정부상태의 교실현장이 되고 있다."라고 개탄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겠는가.

영국도 '노 터치' 정책을 폐지하고, 교실에서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영국이 13년 동안 지속해온 정책을 바꾼 이유는 명백하다. 바로 현장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 지금, 우리 교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서울의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실제 모습이다.

교칙위반 수업방해 친구 간 폭력, 등의 문제 행동이 심각한 6학년 남자 어린이가 있으나 이를 제재하거나

체벌 할 수 없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교사의 제지를 무시하거나 대드는 행동으로 아이들의 우상화 되고 있으며 문제 어린이 스스로도 이런 행동을 즐기는 듯하다. 태도가 더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학부모와의 상담도 가정의 무관심 또는 자기 아이를 두둔하는 쪽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가정과의 협조도 어렵다. 문제는 다른 어린이들의 학습권과 학급 질서가 무시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체벌하지 말라는 지시만 할뿐 마땅한 대책이 없다.

위의 사례처럼 지금 학교는 대단히 혼란스럽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작년 학생체벌 전면 금지 조치 시행 이후,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물론 교권추락, 교실붕괴마저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학생지도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업중의 휴대폰 통화로 인한 수업방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언·폭력은 이미 도를 넘은 상태가 되었다.

<현장 교사가 전하는 "지금 교실에서는">

교사의 학생지도	학생 반응
수업 중 태도불량 지적하면 훈계하면	"체벌금지인거 아시죠?" "어쩔 건데!" "동영상 찍어 신고할 거예요!" "교원평가 때 두고 봅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지도하면	"그래, 우리 엄마한테 일려, 이르라고!"
짧은 치마 입은 여학생 훈계하면	"국민신문고에 교사 모함"
지각한 학생 멈추게 하여 주의를 주면	"지나가는 사람 왜 불러요?"
담임교사에 욕설을 한 학생 꾸짖자	"경찰서에 고발"
"숙제 안 하면 혼난다"라고 말하면	"선생님, 때리면 잘려요!"
교사가 출연학생 적발하면	"밤길 조심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무단외출 학생 훈계하면	"전학 갈 테니 간섭마세요!"

한국교총에서 지난 4월에 실시한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서울, 경기지역 교사 667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10명중 8명(78.5%)이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문제 학생지도를 회피한다'는 응답 결과가 나타나,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교사가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생활지도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절한 지도방법의 부재(59.2%), ▲교사들의 갈등상황 기피(23.8%), 문제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및 학부모소환권 등 강력한 제재수단 부재(12.6%), ▲벌점제로 인한 서열화 등 부작용 발생(1.6%)으로 인식하고 있음도 나타났다.

3. 체벌금지 바람직한 것이었나?

그간 교육계는 학생인권은 존중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과거의 신체 및 도구를 이용한 직접 체벌은 시대적 요구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11.3.14 개정)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학교도 작은 사회라는 점에서 잘한 것은 상을 주듯이, 학칙을 어기고 다른 학생의 수업 방해와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은 그에 따른 상응하는 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던 것이다.

학생의 권리에는 당연히 의무와 책임이 따르며, 권리만 내세우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교실질서 유지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보장할 수 없다. 학교와 교실은 학생과 교원이 1대 1로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1인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우리 학교현장을 관념적 이상론만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학칙위반, 수업 방해 및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벌(간접체벌)을 부과할 수 있어야 교사가 대다수의 학생의 학습권과 교수권을 보호해 수업과 학생지도가 가능하다.

가. 법체계상 혼란 야기

조례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인 바,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 또한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인해 학교현장 혼란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벌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제한적 허용 입장인 반면, 조례가 체벌금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다수 교사를 범법자로 만들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에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학습권, 사생활의 자유, 자치참여의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 헌법에 규정된 보편적 인권으로서 이를 특히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법적 실익이 없다.

특히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조례(지침)와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간의 상충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14일, 교과부는 체벌이 사회적 논란으로 지속되자 도구와 신체에 의한 직접체벌은 금하되, 교육적 체벌(훈계, 훈육 등)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해 시행여부와 방법을 위임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실상 간접체벌(교육벌)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조례가 법령보다 우선일 수 없는 바, 법령-조례-학칙으로 이어지는 법체계 일관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나. 교육 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해결할 문제는 아님

'인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거부해서도 또한 부인해서도 안 된다. 다만, 교육청이 말하는 학생인권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무상급식 전면 도입 등 교육정책적인 사안까지 인권이란 이름으로 과대 포장되고 있어,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두발·복장 자유화,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휴대전화 소지 제한 금지 등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음에도 조례를 통한 일률적,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단위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자율화 추세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조례제정을 통한 일률적인 규제가 학교 내 비민주적, 반인권적 사안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능사는 아니며, 학교마다 가르치는 학생이 다르고 지역여건상 학교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단위학교별로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당사자들이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학칙, 교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면 교육청 등 교육관리당국이 학교나 교사 등의 비인권적 행위나 조치를 감시·감독하거나, 학교규칙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비인권적 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단위학교 자율성을 무시하고, 교수권과 학습권을 저해할 소지가 높음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장소인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사운영 및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규정함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 및 혼란만 가중할 우려가 크다. 또한 교원의 76.4%가 학생생활지도가 어렵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93.4%가 현재 학교질서 및 학교기강이 무너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현장에 적용될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임. 즉 학교 적용 시, 실익보다 문제점이 더 많다.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학생에게 보장하는 것은 교권과 충돌되지 않지만, 학교의 고유한 교권 내지는 교칙을 넘어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교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라. 쟁점별 사안에 대한 입장

(1) 체벌 전면금지

학교현장에서 체벌은 지양되어야하나,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함께 다루어져야 함. 대안제시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 체벌금지에 관한 조항은 교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위조례가 상위법규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상위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⑧) 위반의 소지가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⑧ :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3.18>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의 목적이 지도나 교정을 위한 교육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관련법과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이는 교육적 지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벌을 피할 수는 없다. 즉, 현행 법률에서 교원의 과도한 학생 체벌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법재판소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처벌은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이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 체벌은 제한하면서도 체벌 시행여부 자체는 학교규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2) 두발·복장 자유화

현재 대다수의 학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복장 등의 규정을 교칙에 정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할 권리와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들의 동의하에 행하는 것으로 이를 법적(조례)으로 규제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간의 합의와 교육적 필요에 대한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학생의 개성실현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자율은 자칫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을 초래하고 일시적인 충동과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미성숙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고, 탈선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과거 대다수 중·고교에서 두발·복장의 자율화 이후 심한 홍역 끝에 자율규제로 선회한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두발·복장 등의 제한 및 규제는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단위학교 교칙에 문제가 있다면 의견수렴을 통해 교칙이 수정될 수 있도록 권고·시정하면 될 내용이지 조례로 강제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기되, 단위학교는 관련 학칙이나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시 반드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학교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반영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별로 교원의 교육적인 판단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해야 하고 학생의 건강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 조례 등에 근거하여 학교단위로 가능한 보충수업 시간의 총량을 규정하는 총량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의 조정, 수준별 교육 및 교사의 동일반 연속 집중강의 결정 등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권, 우수교사 초빙권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율운영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4)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금지(사생활의 자유)

생활지도에 있어서 학생의 소지품 검사행위 등은 인권침해 요소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획일적으로 조례로 금지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미성년자인 학생을 유해매체나 위험물품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물품 도난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등 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 물품을 확인하는 것은 부모의 보호·감독을 대신하는 행위로서 이는 단위학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5)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 과정은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해당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더러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학생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비합리·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이며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학생들의 참여는 자칫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쉽고 깊이 있는 안목보다는 근시적인 시각이 앞서 인기 영합주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낳고 이는 교육주체간의 갈등과 분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격체로서 학생의 참여 권리은 존중받아야하나 학생은 미성숙자로서 교육과 지도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6) 학생의 학내외 집회 허용 및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의 학내외 집회가 허용될 경우 교육의 가치중립적 이념이 훼손될 수 있고, 교사의 교수권 및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다. 교내·외에서의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은 자율적으로 보장되어야하나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음. 의사결정이 완전치 못한 미성년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은 자칫 그릇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순수한 학교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를 통제 혹은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병행되어야 한다.

(7) 교내외 행사참석 강요 금지(학습에 관한 권리)

교육과정의 자의적 운영이나 임의적 교내·외 행사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 운영 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학교 행사(프로그램)까지도 제한할 수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임의적인 학교행사로 인해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는 자율적인 학교운영 과정을 통해 풀어나가야 함. 학교운영위원회의 사후보고와 같은 내부기능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영국 교육정책의 반면교사

지난 7월 12일, 언론은 영국이 교육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교육부가 1998년부터 시행한 노터치 정책 폐기를 현지시각 10일 발표했다. 영국 교육당국은 13년 만에 교실에서 교사의 권위를 부활시켰다.

영국은 '학생권리신장' 목표에 따라 1998년에 체벌금지가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교사가 어떤 경우라도 학생에게 손을 댈 수 없는 '노 터치'(No Touch)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 결과, 학생들의 폭력성향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학생들이 싸움을 하거나 교사에게 폭행을 하여도 직접적인 제지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교실을 마음대로 나가도 저지하지 못하고 술이나 마약, 훔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조차 금지되었으며, 심지어는 15세의 남학생이 신규 부임한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체벌금지가 시행된 이후, 영국 전체 교사 중 70%가 학생들의 불량한 행동으로 인해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고, 전체 교사의 92%가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의 품행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함은 물론,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4천여 명의 교사가 학생폭력의 대상이 되는 등 교육현장은 붕괴되다시피 했다.

영국이 노터치 정책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사가 학생 신체에 손을 못 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의 급증으로 교권추락과 학생 피해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으로 영국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결국 학교의 교육기능이 마비되며 선량한 절대다수의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이 학교현장에서 고착화, 내재화됨에 따라 영국정부가 나서 교사에 대한 '적정한 정도의 물리력'을 허용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침서의 핵심은 무엇일까.

새로운 지침서는 분명하게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권위를 교실에서 부활시키고 있으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교실을 떠나려는 학생을 제지할 때 교사들은 합리적인 강제력(물리력)을 사용할 법적 권한 부여. ▲학교 관계자들에게 별도의 허가 없이 주류, 금지약물, 도난품 등에 대한 소지품 검사권 부여. ▲교장에게 학생의 교외, 수업 시간 외의 비행에 대해 징계할 권한 부여. ▲학교는 교내외 모든 집단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들을 확보. ▲교사들을 부당한 고발로부터 보호. ▲교장에게 교사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는 학생을 정학 또는 퇴학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형사범죄가 관련된 극단적인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영국 교육부는 "물리력으로 체벌을 가하는 것은 어느 때나 항상 불법(unlawful)"이라는 점은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명시내용을 이유로 일부에서 교총이 영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생활지도권이 위축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영국의 전철을 고스란히 우리도 밟을 우려가 큰 바, 세계적 흐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은 분명하다.

5.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제언

가. 조례보다는 '현장', '선언문'으로 규정해야 함.

조례 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은 학생의 다양성 존중, 비민주적 학교운영 개선 등이라 볼 때 이 정신을 현장으로 담아내고, 학교규칙(생활규정 포함)을 통해 교육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학교규칙 지키기' 운동 전개 필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간접체벌이 허용되었으므로, 단위학교에서 이러한 사항을 담은 규정(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등)을 학교구성원들의 스스로 성안·논의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규칙 잘 지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 보호 장치("법률 제정") 구축 필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 장치가 필요함. 교육당국이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의 중차대한 과제를 부과하였다면, 교육당국은 교원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권리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체벌 전면 금지 조치 이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사례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교권 실추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공인이라는 신분상의 취약성을 악용한 학부모의 과다한 배상요구로 교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실정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외부인의 자유로운 학교출입으로 인하여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라. 교직의 엄격한 집행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습방해가 심각한 수준의 경우 일정수준이 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7일 이내) 심의 의결해야하며, 학교운영위원회나 외부전문가가 징계위원회에 50% 정도 참여하도록 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고 교원들의 위원에 대한 업무를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학교 폭력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징계가 필요하며,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전학 등을 가거나 2차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대안학교 등으로 가해 학생을 즉각 강제전학이나 징계 등을 신속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부모 폭력이나 폭언 등의 유사 폭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학교 스스로가 고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서 학교가 안전하게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경기 구리시 가운데등학교의 경우 엄격한 교직의 집행으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으며(개교 3개월 18명 자퇴), 이제는 자퇴생 스스로가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단체행동을 경기도교육감에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 성찰교실상설운영 및 대안학교 확대

학교폭력이나 학습방해 등 상벌제에 따른 대상자를 교육할 수 있는 성찰교실을 전문요원이나 전담교원이 운영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정확히 등재하여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초·중학교의 경우 상벌제에 따른 대상자의 학급간 이동을 해서 경력교사가 문제학생을 맡아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선 현장에서 한번 배정되면 같은 학급에서 1년을 마치게 되는데 학교폭력 가해자나 심각한 학습방해 학생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학급이동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1교육청 1개 이상의 대안학교 운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가해자나 정신질환적인 학습방해학생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전학조치하고 이 경우에도 학습이 계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

바. 기타 문제

이 외에도 에이디에이치디(ADHD) 검사의 확대, 인성교육 강화,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봉사활동의 내실화도 필요하다.

6.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체벌금지에 따른 기본환경을 준비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졸속행정이 교권이 무너진 근본 원인이다. 성찰교실에 상주하는 운영전문가 지원, 대안학교 확충 등의 조치를 지금이라도 즉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조롱, 휴대폰 동영상 촬영, 폭행은 언론의 보도 등으로 유행병처럼 번지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제대로 된 교직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경우는 가해자가 대안학교 등에 전학을 가게 하거나, 성찰교실에서 1개월 이상 일반학급과 격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교원들도 변화된 교육환경에 생활지도기술개발, 공정한 교직적용으로 교원학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생활지도

권 재호

(선사고등학교 교사)



IV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생활지도

권재호(선사고등학교 교사)

1. 배경

- 1) 학생인권조례안에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혼선을 빚고있는 생활지도의 원칙과 방법의 모색한다.
- 2) 수직적 상하규범인 타율규정과 수평적 규범인 자율규정을 구분하여 생활지도를 한다.
- 3)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을 통해 각 주체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각자의 규범을 정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취하면서 학생에게는 인권이, 교사, 학부모는 책임과 돌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4) 공동체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규정을 정하고 적용하되, 반드시 교육적 지도를 원칙으로 한다.
- 5) 규정제정과정에서 각 주체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어 자율적 규칙준수 분위기를 만든다.

2. 타율규정 ; 공동체 저해행위에 관한 규정(8조법금)

현재 각 학교의 선도규정을 보면 지나치게 나열적이고 종류가 많아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교에서는 '학교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이것만은 꼭 지키자'라는 관점에서 내용을 단순화시켰다. 실제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8조법금의 내용이 무엇이며, 위반했을 때 어떤 선도처분을 받는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규정제정과정

- 가. 신입생 OT에서 배경 설명 및 학생의견 수렴
- 나. 개학 후 학급회에서 토론과 의견 수렴
- 다. 교사의견 수렴
- 라. 타율규정의 내용을 확정 후, 각각에 대하여 징계수위를 교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운영위 통과

2) 규정 내용

8조 법금	징 계	비 고
흡연	1회 흡연: 학교내봉사 2회 흡연: 사회봉사 3회 흡연: 특별교육 이수 4회 흡연: 퇴학	3년간 적용
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름	
성폭력	학교내봉사 ~ 퇴학	
절도	피해학생에게 해당 물품을 변상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내봉사 ~ 퇴학	
수업방해 행위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사용)	1회 적발: 해당물품을 담임에게 인계한 후, 다음날 종례 때 돌려준다. 2회 적발: 1주일 후에 돌려준다. 3회 적발: 1달 후에 돌려준다.	
무단 출결 (3회의 무단 지각, 결과, 조퇴는 1회의 무단결석)	7회 무단결석: 1차 제적예고 통지서 발송, 학교내봉사 추가 5회 무단결석: 2차 제적예고통지서 발송, 사회봉사 추가 5회 무단결석: 3차 제적예고통지서 발송, 특별교육이수 추가 5회 무단결석: 퇴학	1년간 적용
부정행위	해당고사는 0점 처리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내봉사 ~ 퇴학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	학교내봉사 ~ 퇴학. 단,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교사와 학생에 대하여 중재, 조정, 화해 노력을 우선한다.	

3. 자율규정: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선사고에서는 일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이 아니라 3주체 공동체생활협약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생생활규정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수직적이고 타율적으로 학생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강제 지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생활협약은 교육의 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가 공동으로 규정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는 수평적 상호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각 주체들이 자주적인 자정능력을 키워 참여하고 소통하는 선사고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바탕이 된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들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우리만을 통제하는 규정만 있어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학부모도 스스로를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3주체가 대등하게 상호견제와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규정 제정과정

가. 신입생 OT에서 학생의견 수렴(2월 25~26일)

임시로 준수해야 할 공동체 생활협약을 잠정적으로 정함

나. 각 주체별 공동체 생활협약 내용 정하기

① 학생의 의견 수렴(3/28~30)

학급자치회, 전교학생회 조직 후 전교학생회 주관으로 학급을 기초단위로 학생과 관련된 공동체 생활협약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여 학생 협약안을 정함

② 학부모 의견 수렴(3/21~25)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관련된 공동체 생활협약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부모회에서 토론하여 학부모 협약안을 정함

③ 교사 의견 수렴(3/21~25)

교사회를 중심으로 교사와 관련된 공동체 생활협약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회에서 토론하여 교사협약안을 정함

다. 각 주체별 설문지를 통한 의견 수렴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지 수합 및 분석: 3/28(월)

라. 공청회 개최: 4/3(토)

전체 학생이 참여한 속에서 강당에서 각 주체별로 2명씩 대표자를 선정하여, 상호공개토론회 형식을 통한 공청회 개최(약 3시간 토론)

마. 공청회 후 異見에 대한 주체별 의견 수렴

① 교사 의견수렴 : 4/15(금)

② 학생 의견수렴 : 학급회 토론(4/4, 월.), 전교대의원회 토론(4/8, 금)

③ 학부모 의견수렴: 5/16(월)

바. 학교운영위 통과: 7/8(금)

2)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의 내용

가. 교사의 약속

- ① 체벌을 하지 않는다.
- ②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루하지 않게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한다.
- ③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 ④ 학생에게 기회를 균등히 주고 학생 의견을 경청하며, 차별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는다.
- ⑥ 학생 개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일대일 상담을 많이 한다.
- ⑦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혼낼 때는 단호하고 따끔하게 한다.
- ⑧ 칭찬을 많이 하고 학생의 작은 실수는 관용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해해 준다.
- ⑨ 원인행위가 없을 경우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지 않는다.
- ⑩ 학부모와 항상 거리감없는 대화와 상담을 한다.
- ⑪ 교사 각자의 학습·교육자료를 공유하고 힘든 일은 서로 도우면서 함께한다.
- ⑫ 항상 밝고 웃으며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노력한다.
- ⑬ 일체의 촌지를 받지 않는다.

나. 학생의 약속

- ① 수업시간에 즐거나 불필요한 잡담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업활동에 참여한다.
- ② 교실, 복도 등에 껌, 침을 뱉지 않고, 쓰레기 없이 항상 교실을 깨끗이 사용한다.
- ③ 감정적 대꾸보다는 타인의 말을 존중하고 이성적 대화를 예의바르며 소신있게 한다.
- ④ 학생 상호간에 욕을 하지 않고, 존중하며 친절한 태도로 대한다.
- ⑤ 컴퓨터 사용시간을 줄이고, 게임을 자제한다.
- ⑥ 학교 비품을 파손하지 않고 아끼고 청결하게 사용한다.
- ⑦ 급식시간에 새치기를 하지 않겠다.
- ⑧ 교실, 복도 등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심한 장난을 치지 않고 정숙한 학습분위기를 만든다.
- ⑨ 지정된 교복을 단정하게 입는다.
- ⑩ 거짓말, 평계, 내승을 떨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
- ⑪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리정돈과 청소를 자율적으로 한다.
- ⑫ 일과 중 무단 외출을 하지 않는다.
- ⑬ 서로 인사하며 배려하고 웃음이 넘치는 학교분위기를 만들겠다.
- ⑭ 가정에서 외출할 때는 꼭 어른의 허락을 받는다.
- ⑮ 두발, 화장, 피어싱은 개성의 표현을 존중하되, 공동체에 지나친 위화감을 줄 경우는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학부모의 약속

- ① 학교일에 관심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 소통한다.
- ② 학교 일에 뒤에서 비난하지 않고 자신있게 공식적 통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
- ③ 학생과 1주일에 한번 이상 대화하고,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 ④ 학생들의 사춘기 상황을 이해하고 차분하고 냉정하면서 이성적인 대화를 한다.
- ⑤ 아침밥은 꼭 먹이며, 군것질보다는 가정에서 간식을 챙겨준다.
- ⑥ 1달에 한번 이상 자녀와 등산, 영화보기, 연극관람, 운동경기 등을 함께한다.
- ⑦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관심을 갖고 내 자식처럼 대한다.
- ⑧ 자녀의 자기결정권(장래 희망, 꿈, 진학, 진로 등)을 존중한다.
- ⑨ 타 학생과 비교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잔소리보다는 자녀를 신뢰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 ⑩ 성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고, 인성적 측면에서 감싸준다.
- ⑪ 촌지를 갖다 주지 않는다.
- ⑫ 학생 앞에서 선생님을 비난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적 전문성을 존중한다.
- ⑬ 잠을 충분히 재운다

라. 공동체 생활협약에 대한 준수의 의무

- ①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위원회는 교사대표 3명, 학생대표 3명, 학부모 대표 3명으로 구성하여 공동체 생활협약에 관한 평가와 의견수렴을 한다.

- ② 각 주체별로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신의 약속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비교·평가 토론하여 협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학교에 의견수렴함을 설치하여 생활협약에 대한 각 주체에 대한 의견을 일상적으로 수합하여 각 주체의 단위에서 해결한다.
- ④ <공동체 저해행위에 관한 규정 제 8조 ⑨항-2>에 의하여 공동체 생활협약의 상습위반자로서 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학교내 봉사에서 퇴학까지 할 수 있다.

4. 1학기 동안 운영에서의 시사점과 과제

1) 시사점

- ① 자율규정과 타율규정은 본교 생활지도의 2개의 축으로서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자율규정의 '교사의 약속'을 모든 교사들이 실천함으로서 학생들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상호신뢰가 형성되어 타율규정도 정착이 되고 있다.
- ②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규정제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서 학생들로서는 큰 불만이 없이 규정 준수의 자발성이 보이고 있다.
- ③ '학생의 약속' 중 용의복장에 관해서 개성 표현의 자유를 주게 된 것이 오히려 학생과의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 본질적인 영역인 수업, 상담, 일탈행위 근절 등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어졌다.
- ④ 교사들의 경우, '약속'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적 행동이 나타나서 이를바 교사의 자질에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⑤ 인권이 추상적인 개념이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 속에서 반영되면서,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인지하게 되어가고 있고, 아울러 자신들의 요구를 관절시켜 주는 전교 학생회의 활동이 참여적이고 자주적이며, 일반 학생들에게 신뢰를 주게 되었다.
- ⑥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이 강해져서 학교 혹은 교사에 대한 중요심과 거칠던 학생들이 순치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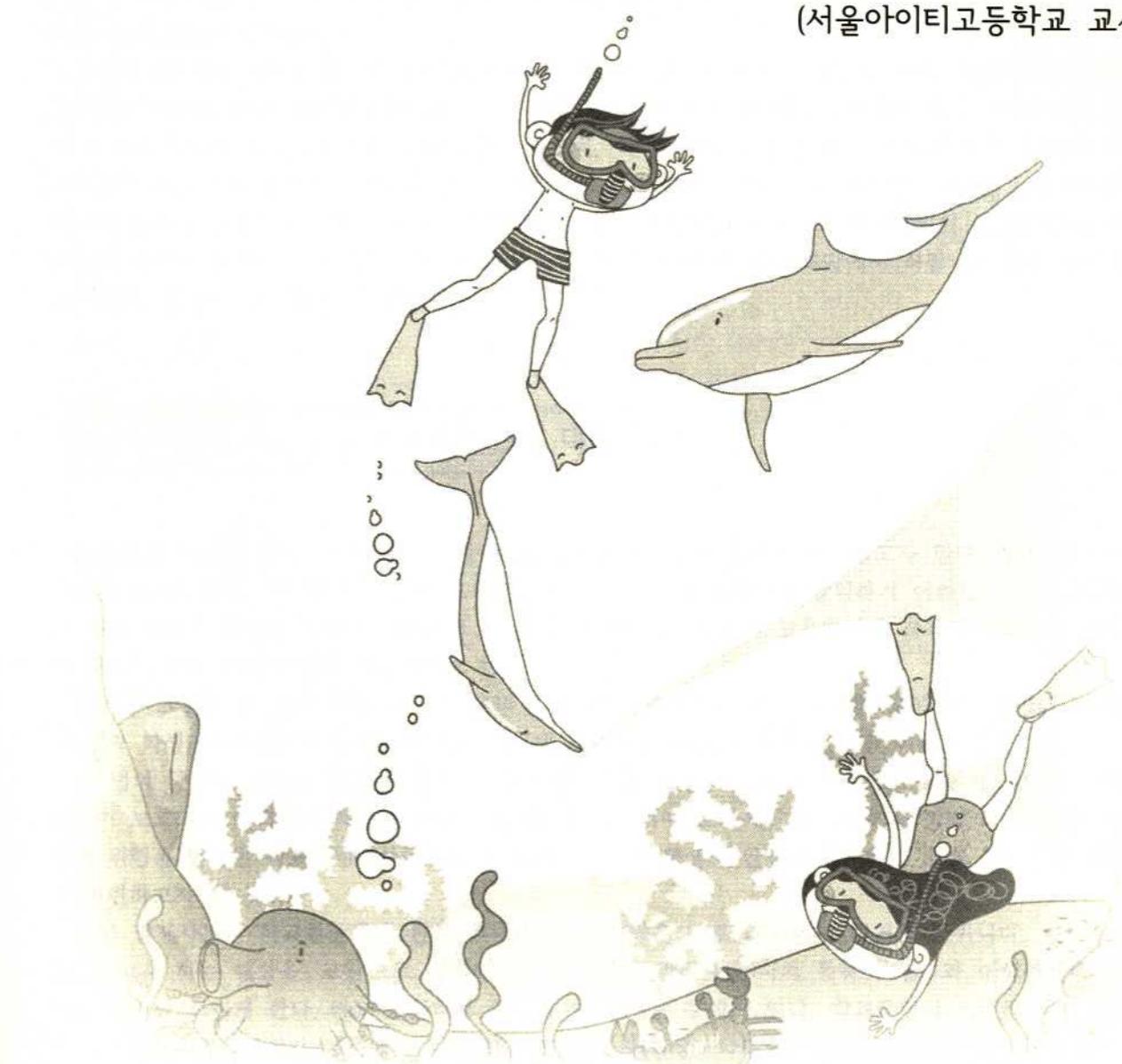
2) 과제

- ① 자율규정 제정과정이 길어 구체적인 실천행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아직 성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학부모의 약속'을 어떻게 학부모회를 통해서 자율규제할지 경로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 ② 3주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비교·평가할 때, 학생회의 비판과 지적을 기성세대인 교사들과 학부모가 이를 쉽게 수긍하고 겸허하게 수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 ③ 타율 규정 중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의 경우' 교사의 성향이나 학생지도 방식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규정화시키기는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교권침해 학생의 경우, 그 원인이 입시제도와 경쟁적인 풍토와 같은 구조적인 면, 학교선택제로 가속화된 특정학생의 집중, 가정의 파괴, 정신병적인 질환, 교우관계 등 다양하여 상담사나 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상담할 필요가 있다.

학생체벌 금지 조치, 악용되고 있다

장 추 문

(서울아이티고등학교 교사)



V 학생체벌 금지 조치, 악용되고 있다

장 추 문/서울아이티고등학교 교사

먼저 학생체벌금지 이후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권 추락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알릴 기회를 주신 서울시교육청에게 감사드린다.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발제자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생활지도는 무척 어렵다. 학생들의 잘못에도 체벌금지로 인해 교사의 지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약간이나마 체벌(간접)이 이뤄질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를 고소·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 스스로가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한 마디로 학생체벌이 교실붕괴, 교권 추락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체벌금지하신 분들 교단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항변할까.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안)』에 대한 오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발제자는 이 법안을 약평하면서, "이 법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당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을 지적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각각의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상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 법에 대한 소수의 우려일 뿐이며, 법제정의 근본 취지를 오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과 학생인권조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토론에 붙인 이유도 모르겠다.

이 법의 궁극적 목표는 그간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단일법으로 제정하여 효과적인 교권보호와 함께 학교개방화 정책에 위협을 받았던 학교출입절차의 보호를 통해 교원 및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발제자는 "학교현장에서 권리 침해를 겪는 사람은 주로 교사이지 관리자가 아니다. 이 법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사와 관리자가 마치 동등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관점은 문제가 있다. 학교운영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교육당사자(학생·학부모, 교원)들에 의한 학교규칙 제·개정을 통한 학교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교육활동보호에 있어서 교장, 교감, 교

사 등의 이해관계를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

2. 학생체벌금지 1년, 학교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지난해 7월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른 바 "오장풍 교사 사건" 이후 우리교육 60년사에 끊임없이 제기된 체벌 논란이 또다시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계와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체벌 전면금지를 선언·시행한 것이다. 체벌금지조치 이후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 체벌논쟁 지속은 물론 교실위기, 교권추락 등 학교현장은 여전히 혼란과 갈등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의 인권만 강조 하는 현 상황에서 교권이 많이 추락하고 있는 상태로 학교현장에서의 위계질서 또한 무시되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3. 학생체벌금지 1년, 더 이상 교권은 없다

한국교총이 지난 6월 말까지 접수한 "2011년 현장교사들이 전하는 교실현실 및 학생지도의 어려움 사례"를 보면, 학교 현장이 어느 정도까지 혼란스러운지, 그리고 교권이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한 교사는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술한 사건들이 일선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나, 언론, 청와대, 대국민 모두 깊이 인지해야 한다. 심각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교사는 교사의 인권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요즘 교사들의 인권이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가르치려 들고, 학부모들이 교사를 가르치려 듭니다. 교사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사의 인권은 보호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보람 없는 직업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올 3월 초,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교사가 실내외화 구분을 하지 않는 학생을 지도 하였더니 해당 교사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고 한다(언론에 보도되지 않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 특히 교사의 벌점 지도 등에 강력한 항의 및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업시간에도 전자담배를 버젓이 피우는 학생들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교실수업 불괴현상이 심각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이 서울에도 일어나지 않는 법은 없다.

<사례 #1>

- 흡연 학생 적발 지도에 선생님 밤길 조심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도 들었다.
-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학생으로 서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재했을 때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다",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협박한다.
-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학생 마음대로 행동한다.
- 학생들의 반항이 심할 정도이다. 교사에게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핸드폰으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문자들을 보내기도 한다.
- 수차례에 걸친 지도/선도/규정 적용/처벌 등 학생선도규정에 의한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도 학생과 학부모가 따르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덤비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함.
- 학생들이 잘못했을 경우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짜증을 내거나 반항하고 덤비는 학생들이 있다. 아래도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행동한다. 반성문을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학생뿐만 아니다. 학부모도 교사를 예전과 다르게 보는 것도 문제다. 교육당국이 스스로 만들어버린 교사의 이미지 – 교사는 잠재적 범죄자다 – 를 학부모도 갖고 있는 것이다. "체벌이 금지되고, 자기 이기주의가 만연한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좀 과하게 말하면 매일 한 두건의 크고 작은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말만 듣고 교사를 협박하는 학부모들은 부지기수고, 때려보라는 식의 비아냥거림으로 교사를 당혹하게 하는 학생들. 때리면 신고한다는 아이들의 말이 바로 교사의 열정을 잠재우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교권 침해 아닐까요."라는 교사의 호소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지난 5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고3인 학생이 지각이 빈번하여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 지각이 발생하여, 30분 일찍 등교시켰다고 한다. 그랬더니 학부모가 아침 7시 정도에 전화를 걸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해당교사에게 언성을 높였으며, 10시경에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학교에서 지각을 하든지 내버려두면 되는데 일찍 등교시키는 별을 준다면 그 별은 부모들한테 주는 것"이라고 항의를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뺏겼는데 해당 학생 학부모는 일주일간 보관 별칙이 가혹하다고 하며 휴대폰 없이는 불편해서 못사니까 당장 돌려달라고 했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과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교장과 교감한테 말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4. 학생체벌금지 1년, 대안 마련 시급하다

위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교실에서 교사의 최소한의 권위 및 문제 학생 통제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어렵고, 열정을 갖고 학생생활지도에 나서면 오히려 학생에게 봉변을 당하거나 시·도교육청의 감사 및 징계를 받는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열정과 사명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호소가 늘고 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마땅한 방법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호소도 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은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체벌금지 조치 이후 학칙을 어기고 많은 학생 및 교사의 권리와 이 같은 노력을 무너뜨리는 현상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문제행동 유형의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체벌금지 이후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와 학교는 자신을 벌할 수 없다는 학생들의 해방감과 그런 문제 학생에 대한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교사의 무력감과 간극이 더 벌어져 교실 위기 및 교권추락의 내재화, 고착화, 광범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사례 #2>

- "아무리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해도 제재할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 정말 답답하다."
- "학교가 무법천지가 될 지경이다."
- "이제 스승이 제자의 비위를 맞추어야하는 그런 사태까지 온갖 같다.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하며 잘못한 것을 인정 할 줄 아는 그리고 반성하는 학생지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바꿔어야 한다."
- "학생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앞으로의 생활지도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학생체벌금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직접체벌 금지하되, 교실 내 문제행동 학생 즉각 제지 허용 통해 학습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보호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노 터치' 정책을 폐기하고, 교사에게 교실 질서 유지권 부여한 영국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둘째,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조례(지침)와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간의 상충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지난 3월 14일, 교과부는 체벌이 사회적 논란으로 지속되자 도구와 신체에 의한 직접체벌은 금지되며, 교육적 체벌(훈계, 훈육 등)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해 시행여부와 방법을 위임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실상 간접체벌(교육벌)을 허용한 바 있다. 조례가 법령보다 우선일 수 없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여, 법령-조례-학칙으로 이어지는 법체계 일관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학생생활지도 대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VI

학생생활지도 대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1. 현제의 상황 파악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체벌금지가 되기 이전에도 체벌을 통해 지도가 불가능한 아이들이었다. 이러한 학생들은 오랜 시간 가정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되었거나 학교생활을 통해 일탈이 일상화 된 학생들이다.

문제는 가정환경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일탈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이전에는 체벌을 통해 문제 상황을 억누를 수 있지만 체벌이 사라진 이후 즉각적으로 억누를 수 있는 기재가 사라졌고, 교실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아이들이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학교 안에 쌓여있던 기존의 문제점들이 체벌금지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처벌에서 교육으로의 전환

지금까지 학교에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서 취한 행동을 살펴보면 학교 안에서 부적응행동에 대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처벌로써 위탁교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탁교육을 하는 곳으로 지정된 대안교실들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곳이 아니다. 부적응 행동을 보인 학생들에게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제대로 된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위탁교육시설의 경우 일주일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5명 이하의 인원으로 운영한다. 좋은 위탁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심지어는 다시 그곳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학생들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는 벌을 주기 위해 보낸 곳에서 잘 지내고 왔다고 해서 속상해 하는 경우도 있다.

궁극적으로 위탁교육은 벌이 아니라 학교의 시스템을 보조하는 또 다른 교육기관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서 퇴학 이전에 가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필요할 때 상시적으로 지도받는 곳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안에 상담교사가 성찰교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의 방법으로 대안교실과 대안학교의 운영이 필요하다.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

에서 교실이 가지는 다인수의 특성상 배려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 마치 장애아들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듯 상시적인 성찰교실과의 유기적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학교밖에 존재하는 대안교실이나 대안학교의 경우도 지금처럼 어려운 절차를 거쳐 최종적 상황에서 선택하는 수단이 되기보다는 상시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교과부에서 도·농 체험학습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다. 시골의 학교와 도시의 학교가 학생들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사례였다. 대안교실과 대안학교의 경우도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정규 교과활동으로 인정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교실에서의 분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상황이 가능하게 됨으로 커다란 갈등의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3. 학교와 가정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합의

체별금지는 학교가 전통적 가족제도의 확대 개념에서 사회적 계약 관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계약관계란 계약의 주체인 양쪽이 가지는 책임과 권리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가족제도의 확대의 개념에서 학교는 무한에 가까운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가정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서로 분명해야 하면 이런 책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계약관계가 성립한다.

사회에서 성인들이 싸움을 할 때 벽살을 잡아도 상대를 때리는 일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를 먼저 폭행하게 되면 이후에 따르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가족의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할 때 학교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 관용적 이였다. 반대로 상식에 어긋나는 폭력을 휘두르는 교사에 대해서도 관용적 이였다. 하지만 학교가 자녀의 교육을 위임하는 주체로서의 학부모와 교육을 위임 받아 전문적인 교육을 멸치는 사회적 계약 관계로 발전한다면 이전과 같은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통제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약관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 모두 계약관계에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의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에 도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

4. 서울시 교육청이 할 일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제안에서 시급히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교육 처벌이 아닌 상시적 교육으로 전환되기 위한 물적 인적 투자이다.

1)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지금은 주로 중등위주로 배치하고 있지만 문제상황은 초기에 해결하거나 예방교육이 사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예산의 우선화

보를 통해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의 경우도 상담 경험이 부족하거나 학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 교육지원청별 대안교실과 대안학교 운영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수단으로써 대안교실과 대안학교가 존재하려면 최소한 교육지원청별 다양한 유형별 대안교실과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교실과 대안학교가 설립되어서 보다 돌봄적인 요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과 교육이 동시에 제동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들이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자와 인력확보(우수교사)가 필수적이다.

빠른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뒤처지는 학생들을 버리고 가는 지금의 학교시스템 속에서 좀 더 느리게 속도를 달리하여 배움의 길로 나아갈수 있는 학생들의 요구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 속에서 학교의 운영은 태생적으로 부적응 학생의 갈등으로 인해 공멸할 가능성 많다.

3) 교육서비스 공단 설립

모든 학교에 우수한 상담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상담교사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공무원제도 시스템에서 상담교사의 획기적인 증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학교에서 우수한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곳은 상담교사 외에서 방과후 학교의 교사도 필요하고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행정요원들도 있다. 교육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여러 우수한 인력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 학교는 신뢰하고 타기관의 책임아래 학교에 우수한 인력이 공급될 경우 보다 쉽게 학교의 문을 열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조례를 통해 교육서비스 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학생생활지도 근본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



VIII

학생생활지도 근본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

목적

-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시대에 적합한 학생지도의 근본 대안 마련
-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 조성

개요

- 의견수렴 내용 : 학생지도 근본 대안 마련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시 고려할 사항
- 의견수렴 방식 : 교직원 회의 등을 활용한 민주적 의견수렴
- 기간 : 2011. 7. 1 ~ 7. 12

결과 : <붙임> 참조

- 총 667개교 회신
 - 초등학교 : 312개교
 - 중학교 : 312개교
 - 고등학교 : 140개교
 - 기타 : 유치원 4개원, 특수학교 4개교

의견수렴 경과

- 생활교육혁신을 위한 '생활교육 혁신 연속토론회' (3회) 개최 : 4월 ~ 6월
-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육 유관 단체 방문 의견수렴(11회) : 3월 ~ 5월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순회 공청회(11회) 의견수렴 : 4.22~5.25
- 학생인권조례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 6.2~6.15
- 학생지도 및 학생인권조례 관련 교직단체 의견수렴 : 6월

학생생활지도 근본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초등학교)

초등학교 312개교

■ 생활지도 대안

- 초등학교부터 정학, 퇴학, 강제전학 등이 가능하도록 학생 징계에 관한 부분을 강화(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적용)
-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학생들만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 마련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사가 학교에 2~3명 상주하여 학생, 학부모 상담 및 치료 실시
- 교사에게 학생지도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적 멘토 필요
- 교사의 업무 경감 및 학급당 인원수 20여명内外로 감축 배정
- 학교 내에 전전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교육청 차원의 일관적이고 강력한 생활지도 체계 구축
- 학교 관리자에게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등 적극적인 학생지도 역할 제시
- 학생지도 관리교사를 따로 두어야 함
- 학생의 행동유형 및 지도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분류하여 지도함
- 교내에서 휴대폰 및 게임기 사용 제한
- 지도 불응 학생에게 타임아웃 및 생각의 교실 등을 만들어 교실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체적인 매뉴얼 제시 필요
- 체벌이 아닌 법제화된 행동 제한 및 행동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
- 학교자치법이 우선시 되어야 함(학교역량 강화)
- 선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바로 연계할 수 있는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 설치
- 전체 학생 대상으로 ADHD 및 다요인 검사 후 사후 관리
- 학기 초 학부모 서약서를 받아 규칙 위반 시 처벌 조항 이행 강화
- 체벌 대체 프로그램의 현실화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 학교 자율성 보장, 우발적인 체벌로 인한 과도한 교사 징계 방지)
- 생활지도 담당자 또는 교사의 생활지도 법적 근거 제도화
-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교외 생활지도 행사권 부여
- 교육청 단위의 학생규칙 및 상벌제 제정 후 학교 특성에 맞는 대안 마련
- 생활평점제의 적극적인 활용, 상벌점제도의 대안적 교육장치 강구해야 함
-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규칙 지키기' 운동 전개 필요, 전국단위 공통으로 학칙 마련
- 문제 사례별 등교정지 일수 학교별 통일
- 학교의 자율성을 주되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기준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함
- 별점 구과 대상자에게 학년에 맞는 생활 지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
- 학교 보안관 활용, 학교 전담 경찰 배정(분쟁 조정 업무 담당)
- 각 학생별로 생활지도용 누적철(학급상담기록부에 경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제작 활용, 모든 교사가 개인별 별점 부여 권한 활용,
- 교원 인사기록카드처럼 생활기록부에 '학생 징계'란을 신설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징계 사유, 징계 처분, 처분일 등 기록을 남겨 초, 중, 고에서 일관적인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따돌림 및 폭력방지 프로그램을 학교 차원에서 마련하여 학년 초에 실시
- 체계적이고 법제화된 상벌제 운영
- 특별 지도 학생의 지도에 대한 사례 연구집 배포
- 담임에게만 집중되는 생활지도 책임 분산
- 전문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 전문의에 진단 의뢰 후 치료, 문제 학생 치료 확인 결과를 학교에 제출 하도록 의무화(학부모 책임강조)
-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함
- 학생 행동 평가항목 개발과 적용 방법 연구 또는 각 과목 성적의 50%는 수업태도로 결정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전문 상담사의 치료 프로그램(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마련
- 토요휴업일의 대안프로그램은 학교 차원에서 운영하나, 방학을 활용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은 교육청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
- 교사와 가정의 긴밀한 협조(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학부모가 작성해 제출 토록 함)
- 학생의 부정적인 행동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할 경우, 알림장안내, 전화상담, 방문상담의 3단계 절차를 통해 고지
- 교육감 조례로 문제 학생에 대한 처벌기준을 확정해서 전체 학부모 공지
- 미국처럼 단계적인 대안학교 제도가 필요함 마련
- 교사의 판단에 따라 정신적,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전문의에게 무료 치료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생활지도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규모 교육 및 홍보 필요
- 학교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법률자문변호사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도록 지원
- 칭찬 점수제 등을 활용하여 즐겁게 학교 규칙을 지키도록 유도
- 아동의 성격과 학습장애에 대한 진단프로그램 도입
- 사법처리 연령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조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활성화
- 학생회를 통한 생활규칙 제정, 학생자율의식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2012년부터 실시되는 주5일 수업과 연계하여 놀토시간을 활용하여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인성체험 교육 실시
- 교육관리직과 교사간의 연대 강화
- 늘어나는 특수아동에 적절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과 제도 필요

■ 교권확립 대안

-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시행 및 교육청 교권보호 전담팀·법률지원팀 구성, 교권법 제정
- 타 학생의 수업권 침해 및 교권 침해를 하는 학생에 대한 강력한 규제·처벌
- 학생, 학부모가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했을 때의 제재 방안 구체화
- 교사들을 경쟁과 통제로 내모는 정책(교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은 지양하도록 함
- 학생들에 대한 분명한 통제권 확립, 엄정한 수업문화 확립
- 체벌 금지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봉사활동 또는 가정학습 등)
- 언론사에 학교 체벌 사건 발생 시 일방적으로 교사를 매도하는 식의 보도 형태 지양
- 교육적 체벌 허용 및 상식적인 범위 내의 간접체벌 허용(교육회초리 허용)
- 학부모의 교사 폭행, 폭언 등의 경우 민형사상 가중처벌 제도 마련(법률적 지원)

체계 마련)

- 보조 교사 배치, 행정전담공무원 배정
- 학부모, 제3자 등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시스템 마련
- 학부모의 교사 면담 및 상담은 사전 약속된 것만 허용
-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민원은 학교, 교육청에서 받지 말 것
- 분쟁을 경찰이나 언론 등 외부로 확산하기보다는 교육계 내부에서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함
- 교육정책 수립 시 탁상공론 보다 현직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면 함
- 경찰의 학교 내 교사 체포, 동행 등의 물리력 행사 금지
- 청소가 너무 부담스러움, 용역업체에서 해결
- 학부모의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
-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을 폐지

■ 학생인권 조례 관련

- 학생 및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 강조
- 교권과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학교공동체 인권조례 제정 요구
- 조례 내용 안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 내용 포함
- 학생 복장 및 교내 핸드폰 사용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포함하지 말 것
- 학생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전달 필요
- 가정폭력이 심한 아동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 정비
-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학생지도 보호 장치 구축
-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제정하고 지킬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캠페인 실시
-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내용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연수, 조례해설서 배포, 학부모 교육 등)
- 복도에 cctv 설치
- 인권교육 구체적으로 실시해야함(비디오 보여주는 식이 아닌 반별 소규모 단위로 실시해야함)
-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우선 운영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중히 제정할 필요 있음

■ 기타

- 자녀 양육과 생활지도 방침, 인권에 대한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다양화
-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 조정 문제 해결 기구 설치
- 학부모의 비교육적, 방임적 태도에 대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자녀 지도에 대한 책무성 강조)
- 학부모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걸쳐 접수,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모 전담창구 마련
-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학생 교육 및 다양한 인성 교육 필요
- 교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대학입시 및 학벌위주의 급여체계 등 사회적 풍토가 변화할 필요가 있음, 사교육 줄이기(과도한 스트레스 방지)

•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 조성이 필요

- 다자녀 갖기 – 보건사회부 연계
- 체육 스포츠 강사 확대로 비중 높은 여교사로 인한 체육수업 부실 방지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
- 학교평가기준 합리화(문제학생의 빈도와 증상의 정도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심하므로 학교예산을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학교와 차별하여 높게 배분하여야 함)
-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일관된 방침 필요, 교사에게 허용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음
- 교사, 상담교사, 행정교사 등 전문가적 체제 도입
- 미국의 학교생활 규정 참조
- 일제 평가 금지

학생생활지도 근본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중학교)

중학교 207개교

■ 생활지도 대안

- 다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도가 불가능한 학생들의 교실 분리 및 학교 밖 격리가 필요하고 그 대상학생을 위한 대안 학교나 특별교육기관 운영이 필요함
- 체벌금지 후 강력한 제재 마련 시급
- 전문가(학교경찰, 상담교사, 행정전담인력, 지킴이 등) 배치 필요
- 사안발생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지도 받아야 함
- '학교 규칙지키기 운동' 이 전개되어야 함
- 간접체벌 허용과 등교정지, 강제전학, 퇴학 법적 허용
- 선도가 불가능한 학생의 전문 상담치료 및 교육지정기관 확대
- 자치위원회 결정인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학교장에게 적절한 제재수단 마련 필요함
- 결석만 안하면 진급이 되므로, 결석만 피하기 위해서 매일 무단 지각, 조퇴, 결과를 행하는 학생들에 대한 조치로 무단지각·조퇴·결과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할 필요 있음
- 학생,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및 인성교육 필요
- 학생자치위원회의 예산지원과 결과가 존중되어야 함
- 소수학생의 인권보다 다수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함
-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으므로 생활기록은 연속되어야 함
- 학생이 인정한 체벌은 허용
- 규격에 맞는 회초리 사용 허용
-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실질적인 문제 학생 지도 필요
- 교내 핸드폰 사용은 국가차원에서 금지해야 함
- 체벌금지에 따라 교사에게 관련연수나 지도 매뉴얼, 보호제도 필요
- 별점을 기록하고 누적 생활기록부와 학부모 통지
- 외부 봉사활동 장소 확보
- 체벌없이 지도 할 수 있는 법, 제도장치 필요
- 삼진 아웃제 실시(핀란드 사례: 동일교사에게 3번이상 징계시 교직대로 처리)
- 학부모가 직접 학교를 내방하여 교사가 보는 앞에서 학부모가 직접 체벌함, 그 후에도 학생이 교직을 지키지 않을시 벌금고지서를 부과하여 학교발전기금으로 책정
- 학급당 학생수 감축
- 체벌금지가 아닌 폭력금지로 바뀌어야 함
-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데 국가차원에 치료 장치 마련
- 의무교육으로 퇴학이 안되는 현 징계방식에 강력한 징계 필요
- 문제 학생은 가정의 문제와 연계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가족상담 전담기관 중설이 필요
- 생활지도가 수업의 반이나 차지하는데 대다수 학생을 보호할 대안이 필요
- 여학생 치마길이에 대한 규정은 필요
- 절도나 폭행 등 범법행위 학생은 사법기관에서 처리

- 학생지도로 인한 교사 업무가 경감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각 구청에 1개씩 학생지도 하는 특별교육기관 설치
- 배움터 지킴이 확보로 외부인의 교문 출입 통제 필요
- 국민의 세금으로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교 문제 학생들에겐 학비 본인부담화
- 현실성 있는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마련
- 성찰교실, 푸른교실 등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
- 소지품 검사 등은 부모의 보호, 감독을 대신하는 행위로서 학교가 결정할 사항임
- 타인권리를 존중하는 생활지도로 전환
- 연속된 징계 받은 학생대상으로 '해병대'교육 등 신체 훈련 필요
- 징계가 내려져도 우기고 버티는 학생은 교육감 산하 특별시설을 설치하여 관리
- 체벌금지로 징계학생이 늘어서 위탁 특별교육기관이 대폭 확대 필요
- 교무보조와 같이 생활지도 보조원 제도 운영
- 성과금 중 일부를 담임교사에게 일정부분 보조금으로 전환할 대책이 필요
- 교직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인정주의 금지)
- 학생처벌에 대해 학교별로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자율권 보장과 최소한의 교과부 기준을 마련(예: 3회 이상 지도 개선이 안될 시 등교정지 조치)
- 학부모의 불시 내교 및 상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교사 지도 불응, 별점 부과 후 입실 금지하여 성찰교실로 보내기
- 상담과 치료를 효율적으로 매개 할 수 있는 시스템 확충
- 학교부적응 학생은 1교사 지정 책임지도
- 가해자와 피해자 분쟁 시 분쟁 조정 전문 기관이 필요
- 1인 1회초리 기증제도로 학부모의 적극적인 생활지도 참여 유도
- wee center등 다양한 격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자치 처벌이후에 보복성 행동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필요
- 교육의 다양성 인정할 필요가 있고 획일적 지침은 현장에서 혼선만 가중됨
- 교내 경찰관 상주 배치
- 가정 내에서 인성교육, 예절교육 강화
-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의무 보충교육 실시
- 심리치료, 분노 조절을 전담할 1교 1병원 연계 시스템 운영
- 민주적인 의견수렴으로 교직을 규정
- 학교 내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율적인 학습 공간 마련
- 사회봉사나 특별교육기관에서 쉽게 교육을 마치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교육받은 학생들로부터 비행을 배워옴
- 학부모의 폭언이나 협박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
- 권리주장으로 교사와 학생의 끈끈한 정이 사라지고 삭막한 학교가 될 우려 있음
- cctv 낙후 장비 교체 및 보안시설 확충
- 학업소홀 학생에 낙제 제도 도입, 유급제도 실시
- 인권을 빙자하여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현상이 나타남
- 출석정지 60일로 연장 필요
- 도시집중화로 거대학교 지양
- 교육을 경쟁 체제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회적인 풍토가 바뀌어야 함

-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유도
- 교사들이 힘들더라도 상담 지도 활용
- 강압적인 훈육 및 추궁, 반성을 강요하는 지도는 지양
- 예절, 기본 생활습관 지도를 위한 외부 강사 초청 강의 시간 확대 필요
- 성적향상을 위한 지도보다는 다양한 직업과 미래 준비 교육이 필요
- 징계 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다보니 징계에 대한 무신경과 실효성이 떨어짐
- 생활평점제 강화
- 교사 각자는 일관성있고 형평성에 맞게 동일 행동에 동일 별점을 주어야 함
- 기초질서 훈련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
- 학칙은 자율에 맡겨야 하고 규정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

■ 교권확립 대안

- 교사에게 폭언, 폭행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법안 마련
- 교육감이 직접 학교 현장 체험하여 정책 적용 시 효과와 부작용을 아셔야 함.
- 선생님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학부모 소환권을 마련하고 법적 효력을 가질 방법 강구
- 수업 규율은 강화하고 수업 규율 외에는 완화
- 교직윤리 확립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 타인을 배려하도록 학생과 학부모 동반 연수 필요
- 보호자가 아닌 삼자가 개입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범주 정의 필요
- 교사의 책임과 학생의 권리만 강조된 편향적 교육 풍토 전환 및 대책 마련
-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 폐지
- 수업에서 교사에게 최대한 자율권 보장

■ 학생인권조례 관련

- 학교인권은 조례보다는 현장이나 선언문으로
- 학생 책임이 강조된 학생인권 조례안이 필요
- 학습권과 수업권도 함께 강조 되어야 함.
-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학부모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두발 자유나 교복 자유를 대다수 학생이 원하지는 않음
- 학생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엄중 조치가 필요
- 제정 후 분쟁 및 갈등 조정에 대한 법률마련 필요
- 교권과 학생인권을 아우르는 학교공동체 인권조례로 변경
- 인권교육 매뉴얼 제작 보급 활성화
- 민주시민 육성의 장으로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 조례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학생인권 조례 내용과 조례 해설서 배포 필요
- 학교 밖, 가정 내에서의 인권 보장도 조례에 포함
- 학생인권 조례 유보와 취소
- 학칙, 교칙이 학생 인권조례와 괴리되지 않아야 함

학생생활지도 근본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고등학교)

고등학교 140개교

■ 생활지도 대안

- 전문상담교사 등 생활지도 전문가 인력지원(학생대비 상담인력 절대부족) 및 상담시간 확보
-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청소년전문가, 진학진로전문가, 행정 공무원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지원체계 필요
- 초중고의 생활기록부 자료를 대학진학이나 취업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의 경우 내실화 및 확대 필요(기관이 부족하여 보내지 못함)
- 각 학교별 교감을 3명으로 함(교수, 행정, 생활지도)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등 선도불가능 학생의 경우 학부모 지도, 학부모소환 면담 실시, 교육청의 교정프로그램 마련 필요
- 다양한 진로교육 및 준법정신 교육 강화
- 생활지도부 교사 상담연수 기회 확대 및 교사연수지원(ADHD, 우울증, 인터넷중독 등)
- 학교민원 관련 사안에 대한 매뉴얼 필요
- 교사에게 경찰권을 부여하거나, 경찰에 의뢰하여 학교폭력 등의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
- 직업교육 고1학년부터 실시하여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선도할 필요
- 단속위주의 교문지도 금지
- 학생지도에 학부모 역할과 책임 강조
- 지도 불응 3회 이상은 전학조치(관내전학 불허)
- 별점 누적 시 유급제도 실시
- 인성교육프로그램 강화(예절 교육, 노작 교육, 마음 다스리기, 타인 배려 등)
-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강화
- 생활지도를 위한 전문화된 가이드 상주(학부모상담, 교육과정선택상담, 건강관련관리, 급식,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왕따 문제나 학생인권 침해사례 등의 불편사항 해소, 대입상담전문화)
- 매년 교사지침서 발행
- 교사의 감정적 언행 및 신체 접촉 피할 것
- 학교교칙 준수에 대한 학생 책임 강조
- 교육청 차원의 학교규칙 지키기 운동 전개
- 생활지도부의 명칭을 인권친화부로 변경
-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지켜야할 규칙 주지 필요
- 스트레스해소 프로그램 마련(명상, 음악감상, 낙서, 인형놀이 등)
- 학생들의 분노조절훈련 강화
- 교육청이 책임지고 문제 학생에 대한 보편적 처벌 기준 마련할 필요
- 교실 안 지도 : 문제행동 시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원인 파악 후 경고 훈계(주의, 경고, 선도의뢰 등의 단계별 지도)
- 교실 밖 지도 : 경고에도 문제행동 반복 시 격리 후 수업 진행

- 학습 결손 발생 시 유급, 계절학기 이수
- 학습방해 학생 분리수업제도 운영
- 줄세우기 식의 성적처리 지양
- 학과 공부의 양을 줄이고 뛰어 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바르고 긍정적인 성품 가추기
- 생활평점제는 인성 지도적 차원에서 반성의 기회를 준 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문화 형성 필요
- 유기, 무기정학, 퇴학, 근신제 부활
- 교육청자원에서 학칙 준수 철저 교육
-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상벌점제 강화
- 사회복지전문기관, 위센터의 상담, 치료교육프로그램 확대
- 다별점 학생과의 산행, 캠프
- 학생의 징계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법적 책임 부여
- 선도위원회의 징계 결과 생활기록부에 기록
- 상점을 통해 우수반 시상 칭찬제도 운영
- 징계처분 미 이행시 퇴학, 대안학교로의 강제전학 필요
- 교칙에 의거 검증절차를 거친 누적점수 만으로도 퇴학 조치 가능하도록 함
- 민주적 교칙 제정
- 별점에 의한 자퇴, 퇴학의 경우 타학교 전출 이전 별도의 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 필요
- 별점부과 이후 상담 필요 이수
- 성찰교실 운영 인력 확보
- 중학교 퇴학제도 도입
- 단계를 거친 주의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반성, 성찰

■ 교권학립 대안

- 교권 학립 방안 연구 개발, 교권학립 제도 개선 추진
- 교육적 체벌허용(매의 규정 정하고 1~2회의 체벌 허용 방안 필요)
- 수업방해 및 교사지도 불응 시 부모소환제 실시
- 필수과목 미 이수시 졸업불가
-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항의성 방문은 조사의견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업무방 해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 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간접체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의 절차를 가질 필요
- 간접체벌 일부 허용(체력단련, 정신력강화 목적 일차려)
- 선도위원회 권한 강화
- 상급기관의 포괄적이고 유연한 지침으로 창의성, 효율성 지도 가능
- 학급 당 정원 축소 및 행정 전담 인력 지원으로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
- 교권침해
- 학교안전공제에 더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 교권 침해의 개념과 사례를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시

- 일부 교사의 위법행위를 모든 교사에게 일반화하는 언론보도로 자체 요청
- 학부모 동의 없이도 취지고지 후 지도할 수 있는 학교권한 부여 필요
- 학부모, 제3자와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 및 시스템 필요
- 학생의 수업권과 교권학립을 위해 경찰 상주 필요
- 청원경찰제 도입(학교폭력, 교사지시불이행, 교권침해에 대해 준경찰권 부여로 학교질서 유지)
- 교사의 지도가 수월성이나 결과 중심 보다는 과정을 살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

■ 학생인권 조례 관련

- 핸드폰, mp3등의 전자기기 사용 반대
- 두발, 복장 완화
- 미성년자의 집회결사의 자유 반대
-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선언문'으로 규정
- 학생의 책임이 강조된 학생인권조례 필요
- 학생체벌금지 대신 생활기록부 기록 허용
- 학생의 자치역량 강화 방안 강구(예: 생활수칙 제정, 자치법정운영 등)
- 학생인권존중이 학교규칙에 대한 준법정신 약화 우려
- 영국 '노터치'제도 폐지됨은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체벌금지에 대한 제고 필요
- 학생의 권리 주장이 타인에게 피해일 수 있음을 강조할 것, 타인인권존중 강화
- 조례안의 올바른 적용과 활용을 위한 해설서 필요
-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칙을 제정하라는 면피성 정책 지양
-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 학생인권조례안 발표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인권교육 실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교권보호 법률제정 필요
- 가정에서의 학생보호법 규정 필요
-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잘못된 인식에 의한 교권침해 예방 필요
- 조례제정의 이유와 원칙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공감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공표할 것
- 인권교육 강화, 노동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개발 및 교원 학생연수 실시
- 교사인권조례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 환기 필요
- 학생, 교사에 관한 학교공동체인권조례 제정 필요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는 현행 입시 제도에서는 실현 불가능

■ 기타

- 인권의식신장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인권자료개발보급, 신문방송매체활용,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활용하여 보편적 인권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
- 장학사, 교감, 교장 임용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수업 잘 하고, 많이 하는 교사 대우하는 풍토 필요, 무능한 교사 과감한 퇴출 필요
- 비정규직 반대와 예고의 경우 실기강사에게도 학생지도권 부여
- 대안학교 증설
- 사교육시장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대책 필요

- 입시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와 사교육에 종사하는 인력의 유통성 있는 공교육 흡수 필요
- 상담교사, 행정교사 등 전문가적 체제 도입.
- 자율형 사립고에 의한 인재 독점으로 인문계 수업이 불가능하므로 자율형 사립고 취소 필요
- 담배판매업주 처벌 강화
- 인권교육 연구학교 지정 운영
- 인권교육센터를 구축운영(장애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등 소수자를 위한 맞춤식 인권교육실시, 인권교육실태 파악 및 문제 해결 지원)
- 남교사 확보
- 직업교육강화(인문고 재학생 중 인근학교 4~5개를 묶어 거점학교로 정해 컴퓨터, 조리, 제과제빵, 보일러, 용접, 상업 실무 등을 위탁수강하게 하여 학업에 관심 없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함)
- 입시위주 교육 탈피, 대학 나오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
- 흡연 및 약물에 관한 홍보 교육 (학교 클린 교육)
- 학교 내 학생고충처리부 설치

학생생활지도 근본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유치원, 특수)

유치원 4개원, 특수학교 4개교

■ 생활지도 대안

- 분쟁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 안에 설치되어 접근의 용이성을 높임
- 교육여건 개선(학생 수 감축, 교사 업무 경감 등)
- 교사, 학생 모두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전문인력 배치

■ 교권학립 대안

- 교권 침해 및 불만 사항이 있을 때 이를 해소하고 중재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교권침해 및 교육불만 해소를 위한 긴급 상담 마련 체계 시스템의 경우 1차(학교), 2차(지역교육청), 3차(시도교육청)로 단계를 밟아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및 장치 필요
-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인격모독, 명예훼손, 폭력 등에는 법률 및 상식적인 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권 보호

■ 학생인권 조례 관련

- 특수학교 학생들의 낮은 지적 능력으로 인해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 및 다른 학생들과 교사에게 공격행동으로 신체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에 대처방안이 요구됨
-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의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되어서는 안되고, 따로 분류하여 이루어져야 함(예를 들어 학생인권 보호에 앞서 학생의 생명보호와 2차 장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신체적 제지가 필요할 때가 있음)
- 학생인권에 대한 제대로된 인식과 권리 강조 필요

■ 기타

- 교원대상 인권교육 확대
- 가정 교육을 강조하고, 학부모 교육 필요



기획 | 김홍섭(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최병갑(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
방승호(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 장학관)
이대해(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 장학사)
이성숙(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 장학사)
신선호(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 장학사)
정효나(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 주무관)

편집 |

제작 | 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

학생인권조례 시대, 생활지도 근본 대안 모색

인쇄일 | 2011. 7. 19.

발행일 | 2011. 7. 19.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우. 110-781)

전화 : (02) 3999-550 FAX : (02) 3999-754

인쇄처 | 화신문화주식회사(02-2277-0624)
